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2018. 6

세법연구 18-06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2018.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 현 영 공인회계사

홍 민 옥 공인회계사

목차

I. 서론	9
II. 공유경제 개관 및 조세쟁점	11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11
가. 개관	11
나. 공유경제의 유형과 현황	13
2. 공유경제의 사업모형	19
가. 공유경제의 참여자와 거래구조	19
나.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수익모델	21
다. 플랫폼 사업자의 지적재산권과 데이터 활용	23
3. 공유경제의 조세쟁점	24
가. 플랫폼 사업자	24
나. 공유경제 참여 개인	26
4.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도입 현황 및 과세체계	28
가. 공유경제 도입 현황	28
나. 공유경제 과세체계 및 문제점	30
III. 주요국의 플랫폼 사업자 관련 과세제도	35
1. 법인세	35
가. OECD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 논의	35
나. EU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지침	41

다. 이탈리아	45
라. 이스라엘	47
마. 슬로바키아	48
바. 인도	49
2. 부가가치세	51
가. OECD의 디지털경제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	51
나. EU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54
다. 일본	56
라. 호주	57
마. 이스라엘	58
3. 소결	59
가. 법인세	59
나. 부가가치세	63
IV.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 공급자에 대한 과세제도	65
1. 소득세	65
가. 우리나라	65
나. 미국	72
다. 호주	81
라. 일본	86
마. 영국	91
2.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96
가. 우리나라	96
나. 미국	99
다. 호주	100
라. 일본	103
마. 영국	105

3. 소결	105
가.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105
나. 소득세	107
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112
V. 공유경제 참여 개인의 거래정보 확보방안	115
1.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116
2. 국세청의 세원포착 방안	117
가. 강제적·주기적 자료제출 의무	118
나. 국세청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119
3. 소결	120
VI. 시사점 및 결론	123
1.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문제	123
가. 법인세	123
나. 부가가치세	126
2. 개인 과세문제	127
가. 현행 과세 규정의 적용	127
나. 서비스 종류별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검토	129
다. 소규모 참여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 도입	130
라. 수익창출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의 비과세 검토	130
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자의 명확화	131
3. 공유경제 참여 개인의 거래정보 확보방안	132
4. 결론	133
참고문헌	136

표 목차

〈표 II-1〉 공유경제의 확산과 다변화	13
〈표 II-2〉 공유경제의 분야별 사례	14
〈표 II-3〉 주요 공유경제 플랫폼의 사용자 현황	18
〈표 II-4〉 국내 분야별 주요 공유경제 기업 현황	29
〈표 II-5〉 국내 주요 도시의 에어비앤비 이용 현황	29
〈표 III-1〉 디지털경제에 대한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 국제비교	61
〈표 III-2〉 디지털경제에 대한 고정사업장의 대안적 기준 국제비교	62
〈표 III-3〉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제도 국제비교	64
〈표 IV-1〉 미국의 차량공유에서 소요된 비용 공제 예시	77
〈표 IV-2〉 호주의 차량 관련 세무상 공제대상 비용	85
〈표 IV-3〉 우리나라와 일본의 숙박공유와 관련한 법률 비교	106
〈표 IV-4〉 개인이 숙박공유를 통해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국제비교	109
〈표 IV-5〉 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국제비교	110
〈표 IV-6〉 개인이 차량공유를 통해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국제비교	111
〈표 IV-7〉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요건 국제비교	113
〈표 V-1〉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거래내역 확보 방안	122

그림 목차

[그림 II-1] 공유경제 주요 영역의 시장 규모 전망	17
[그림 II-2] 공유경제 주요 영역의 연평균 성장률(CAGR) 전망	18
[그림 II-3] 공유경제의 지역별 규모 비중	19
[그림 II-4] 공유경제의 사업모형	22
[그림 II-5] 국내 주요 도시의 에어비앤비 사용 현황	30
[그림 IV-1] 호스트의 개인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판별과정	75

I. 서론

-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저활용자원을 개인 간 거래(P2P)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또는 gig economy)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B2B 또는 B2C 거래와는 달리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P2P 거래가 주된 거래형태인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기존 국제조세체제와 각국의 세법은 이에 대해 아직 효과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적인 경제와 달리 공유경제하에서의 거래들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세수 손실과 함께 기존 경제활동과의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를 초래함
- 우리나라의 공유경제는 아직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서비스가 다변화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과세문제를 P2P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 공급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그리고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I장에서는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사업모형을 소개하고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조세쟁점을 논의함

- 제Ⅲ장은 첫 번째 조세쟁점인 국외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공급자 간의 서비스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OECD와 EU를 중심으로 한 과세방안 논의와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대응방안들을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두 번째 조세쟁점인 공유경제 참여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과세제도를 검토함
 - 공유경제 규제 환경¹⁾은 조세 측면 외에도 다양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조세 측면과 조세와 직접 연관된 규제 환경에 대해서만 조사함
- 제Ⅴ장에서는 플랫폼 사용 개인 간 거래의 과세 양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거래정보 확보방안을 논의함
- 끝으로 제Ⅵ장에서는 각 장에서 논의한 주요국의 공유경제 관련 과세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과세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함

1) 예를 들어, 숙박공유의 경우 숙박공유에 참여가능한 호스트의 요건을 다른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차량공유의 경우도 차량공유에 참여 가능한 운전자나 차량공유 행위의 적법성을 다른 법률에서 제한함. 본고에서는 조세제도와 직접 관련 있는 규제만 간략히 언급하고 관련 제반 법률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았음

II. 공유경제 개관 및 조세쟁점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가. 개관

-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이베이(Ebay), 위워크(WeWork)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sharing, gig economy)는 최근 10년간 그 규모와 영역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경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

- 공유경제란 이미 생산되어 소유된 재화 또는 무형의 저활용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생산과 소비가 중심이 되는 기존의 상업적 경제(commercial economy)와는 차별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²⁾
 - 공유경제는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경제위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의 확산,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 등을 배경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 하버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됨
 - 공유경제는 기존 자본주의 경제의 대량생산 및 소비와는 달리,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나누어 사용하는 협력소비의 경제방식으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또는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로도 불림³⁾

2) Lawrence Lessig,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Books, 2008, pp.143~161. 이성엽,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행정법연구』, Vol. 44, 2016, pp.19~41에서 재인용.

3) 함창모, 「공유경제의 이해와 대응」, 충북 Issue & Trend, Vol. 24, 2016, pp.7~11.

- 공유경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용 접근권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 ③ 과세 등 관련 규제 적용의 미비점 등을 들 수 있음
- 공유경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으로 자원을 소유하는 ‘공유’의 개념보다 개인이 소유한 저활용자원에 대한 구성원의 사용 접근권(access)을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공유경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판매자와 구매자 외에 이들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체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임
 - 공유경제보다는 접근기반 경제(access economy)가 적합한 용어라는 의견이 존재함⁴⁾
- ICT의 발전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였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판매자와 사용자 간 발생하는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공유경제의 확산에 공헌함⁵⁾
 - 공유경제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주로 개인들로, 이들은 조직화된 기업들과는 달리 거래를 위한 시장조사, 홍보, 거래협상 및 체결, 대금결제, 보험 가입 등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등 거래비용이 높음
 - 반면, 공유경제에서의 개인 판매자와 수요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비대면적인 거래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 간 거래(peer-to-peer transaction, “P2P”)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킴
- 한편, 공유경제는 기존 제도권하의 경제활동과는 달리 개인 간 거래(P2P) 형태를

4) Giana M. Eckhardt, Fleura Bardhi, “The Sharing Economy Isn’t About Sharing at All,” *Harvard Business Review*, 2015. <https://hbr.org/2015/01/the-sharing-economy-isnt-about-sharing-at-all>, 검색일자: 2018.6.18.

5) 노영훈, 『공유경제시대에서의 조세정책적 과제: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p.17~19.

가짐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 및 환경 관리나 납세부담 등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함

-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의 쟁점으로는 불법 영업,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따른 사회 안전망, 소비자 보호, 기존 경제활동 주체와의 불공정경쟁 등을 꼽을 수 있음⁶⁾

나. 공유경제의 유형과 현황

1) 공유경제의 유형

- 공유경제의 범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유형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Jeremiah Owyang⁷⁾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2014년 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등 6개 영역에서 2016년에는 16개 영역으로 확대 및 다변화되었음

〈표 II-1〉 공유경제의 확산과 다변화

구분	공유경제 영역		
Ver. 1 (6개 분야)	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Ver. 2 (12개 분야)	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건강 및 복지, 물류, 기업, 유틸리티, 도시행정, 교육	
Ver. 3 (16개 분야)	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건강 및 복지, 물류, 기업, 유틸리티, 도시행정, 교육	노동자 지원, 분석 및 평판, 의료

자료: <http://www.web-strategist.com/blog>, 검색일자: 2018.6.22. 재인용: 나승권의(2017), p.23.⁸⁾

6) 이성엽(2016), pp.30~35.

7) <http://www.web-strategist.com/blog>, 검색일자: 2018.6.22.

〈표 II-2〉 공유경제의 분야별 사례

구분		주요 플랫폼 기업
차량공유 (Vehicle Sharing)	차량 임대 (Loaner vehicle)	Flight Car, CAR2GO, Getaround, Drive Now
	보트 임대 (Loaner boat)	SAILO, BOATSETTER, Boat Bound
운송 서비스 (Mobility service)	지원 (Support)	Purple, JustPark, CARMAnation, FILLD
	발렛 서비스 (Valet services)	Valet Anywhere, LUXE, Caarbon, ZIRX
	탑승 서비스 (Ride as a services)	Uber, BlaBla Car, HAILO, Lyft, Didi Chuxing, Rallybus, Surf Air
서비스 (Services)	개인 (Personal)	Fiverr, Airtasker, Musketeer, TaskRabbit
	사업 (Business)	CrowdSPRING, HOURLYNERD, Upcounsel, Field Agent, 99 Designs, Kaggle
음식 (Food)	음식 배달 (Food delivery)	UBER EATS, Sprig, Spoonrocket, Saucey
	음식 공유 (Shared food)	EatWith, LeftoverSwap, MealSharing, VizEat
	음식 준비 공유 (Shared food prep)	Rub&Stub, The food Assembly, Kitchit, Barnraiser, Kitchen surfing
제품 (Goods)	메이커 운동 (Maker movement)	Etsy, Brit+co, Shapeways, Custom Made, The Grommet, Maker's Row
	제품 임대 (Loaner products)	Rocksbox, Bag Borrow or Steal, Rent the Runway, Peerby
	중고 제품 (Pre-owner goods)	Ebay, Trademe, Craigslist, Wallapop, OfferUp, yerdle, Poshmark, Move loot
금융 (Money)	전자화폐 (Cryptocurrencies)	Coinbase, Litecoin, Bitcoin, Ripple
	클라우드펀딩 (Crowdfunding)	Experiment, Crowdfunder, Funding Circle, Kickstarter, PAVE, Circle Up
	대금업 (Moneylending)	Rate Setter, Able, FAIRCENT.com, LendingClub, Zopa, Prosper

8) 나승권·김은미·최은혜,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표 II-2〉의 계속

구분		주요 플랫폼 기업
공간 (Space)	개인공간 (Personal space)	9flats.com, FLIPKEY, HOUSE TRIP, Airbnb, Tujia, HomeExchange, HomeAway
	사무공간 (Work space)	ShareDesk, Wework, Storefront, Pivotdesk, Breather, Peerspace
복지·미용 (Wellness & Beauty)	미용 (Beauty)	MY GLAMM, Be GLAMMED, GLAM SQUAD
	복지 (Wellness)	CLASSPASS, Kindly, Entrenaya, Zeel
물류 (Logistics)	해상운송 (Shipping)	ROADIE, TRANSFIX, PiggyBee, Bellhops
	시내 배달 (Local Delivery)	Shadowfax, Deliv, Instacart, UBER Rush, POSTMATE, Ghostruck
	보관 (Storage)	Roost, Stashbee, MakeSpace
기업 및 조직 (Corporate and Organizations)	플랫폼 (Platforms)	Mila, Sharetribe, CLOUD COMMERCE, Tilt, Crowdtap, Juggernaut, Innoverne
	공급망 (Supply chain)	LOCAL MOTION, Cargomatic
	고용자 서비스 (Employee services)	SLICE RIDES, Twogo
유틸리티 (Utilities)	통신 (Telecommunication)	Open Garden, SERVAL Project, Fon
	에너지 (Energy)	Gridmates, Vandebron, Yeloha, MOSAIC
도시행정 (Municipal)	플랫폼 (Platforms)	SeeClickFix, Getable, Machinerylink
	시 공영 자전거 (City sponsored bikes)	Santander cycles, Velib, Bicing
교육 (Learning)	강의 (Instructor-led)	Coursera, Simplilearn, KHAN ACADEMY, THINKFUL, Udemy
	P2P (peer to peer)	Gibbon, Instructables, P2PU, Maven
	책 공유 (book sharing)	ZOOKAL, Sidewalk, Chegg

〈표 II-2〉의 계속

	구분	주요 플랫폼 기업
노동자 지원 (Worker support)	임대업자 서비스 (Renter Services)	Guesty, TurnKey, HostTonight, Guesthop
	보험 (Insurance)	GUEVARA, Friendsurance, Metromile
	노동자원 (Resources)	Stride, BREEZE, Peers, SherpaShare
분석 및 평판 (Analytics and Reputation)	운전자 서비스 (Driver services)	WHAT'S THE FARE, RIDESCOUT
	신분 및 평판 (Identity and reputation)	eRated, HireRight, TRUSTCLOUD, Traity
	임대업자 서비스 (Renter services)	Kigo, BeyondPricing, EVERBOOKED
의료 (Health)	서비스 (Services)	MED ZED, Eaze, Dispatch, Pager, Doctor On Demand, Medneo, Curbside Care
	P2P (peer to peer)	CrowdMed, Be My Eyes, COHEALO

자료: <http://www.web-strategist.com/blog>, 검색일자: 2018.6.22. 재인용: 나승권 외(2017), pp.24~25.

2) 공유경제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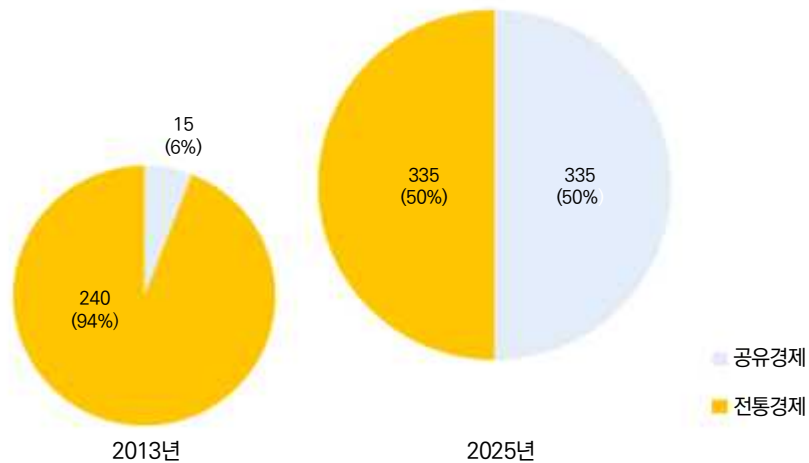
- 공유경제는 그 영역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시장에서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증가되어, 공유경제의 주요 5가지 영역(sector)의 전 세계 매출 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 3,3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⁹⁾
- 공유경제의 주요 5가지 영역으로는 P2P 금융, 온라인 채용(staffing), P2P 숙박(accommodation), 차량 공유(car sharing), 음악과 DVD 스트리밍 등이 있으며, 이들 영역은 2025년까지 기존 시장의 50%까지 점유할 것으로 예측됨
 - 상기 공유경제 영역에 대응되는 기존 시장으로는 장비 대여, B&B 및 호텔, 차량 대여, 책 대여, DVD 대여 등이 있음

9) PwC, "The Sharing Economy: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2014.

- 지역별로 공유경제의 규모 비중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규모가 확산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외의 국가에서는 그 규모가 아직 작은 것으로 나타남¹⁰⁾
- Airbnb, Alibaba, Amazon, Ebay 등 주요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미국과 중국에 소재함¹¹⁾

[그림 II-1] 공유경제 주요 영역의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달러)



주: 공유경제는 P2P 금융, 온라인 채용, P2P 숙박, 차량 공유, 음악과 DVD 스트리밍 등 주요 5가지 영역을 나타내며, 전통경제는 장비 대여, B&B 및 호텔, 차량 대여, 책 대여, DVD 대여 등 상기 공유경제와 대응되는 5가지 영역을 포함함.

자료: PwC(2014).

10) 함창모(2016), p.8.

11) Aqib Aslam and Shah, Alpa, "Taxation and the Peer to Peer Economy," IMF working paper, IMF, 2017, p.8.

[그림 II-2] 공유경제 주요 영역의 연평균 성장률(CAGR) 전망

(단위: %)



자료: PwC(2014).

<표 II-3> 주요 공유경제 플랫폼의 사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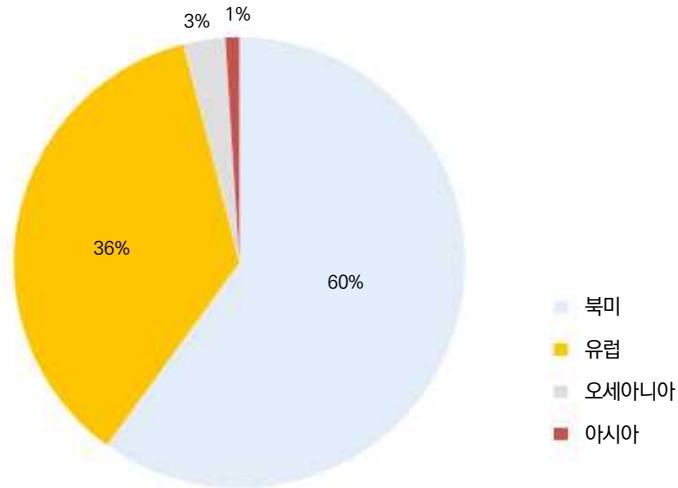
(단위: 백만명)

기업명	본사	서비스	사용자 수
Airbnb	미국	여행	100
Alibaba	중국	제품	440
Amazon	미국	도서, 제품	300
BlaBlaCar	프랑스	차량 공유	40
DiDi Chuxing	중국	차량 공유	400
Ebay	미국	제품	170
Lyft	미국	차량 공유	40
Uber	미국	차량 공유	40

자료: IMF(2017), p.8.

[그림 II-3] 공유경제의 지역별 규모 비중

(단위: %)



자료: 함창모(2016), p.8

2. 공유경제의 사업모형

가. 공유경제의 참여자와 거래구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경제는 개인이 소유한 저활용자원에 대해 타인에게 사용접근권(access)을 부여하는 경제 형태로, 공유경제 참여자들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그림 II-4] 참조)
- 플랫폼(platform)이란 복수의 이용자 집단이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을 말하며¹²⁾, 공유경제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간의 재화나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설비를 뜻함

12)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2010, p.75.

- 에어비앤비, 우버, 위워크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과정에 관여하면서 거래를 증개함¹³⁾
 - 숙박공유의 경우 게스트와 호스트 등록, 예약 및 자금결제, 이용자 후기 관리, 시스템 관리, 소비자 불만처리 등의 분쟁해결 기능을 담당하는 등 단순 증개인 차원을 넘어 실제로 공유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

- 이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¹⁴⁾상의 공유경제 모형 중 우버(Uber)와 같은 차량공유 사업모형을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사업모형을 설명함
 - OECD 보고서는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모형을 다루고 있으나, 플랫폼 사업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뿐 거래구조나 수익창출 과정은 유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 모델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사업모형을 기술함¹⁵⁾

- 디지털 플랫폼은 차량 소유주(“개인공급자”)와 승객(“개인소비자”)을 증개하여 거래가 성사하도록 하는 데서 가치를 창출하며, 다음의 주요 과정을 통해 사업이 전개됨
 - 첫째, 개인공급자를 모집함
 - 이때 개인공급자는 특정 지역에 구매 받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 모집이 이루어지며, 어떤 국가들에서는 개인공급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렌탈 차량 운행자인 경우도 존재함
 - 둘째, 개인공급자의 위치와 서비스 제공 시간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활동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함
 - 셋째, 모바일 앱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여 개인소비자가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로부터 받는 이용후기(review system)를 기반으로 거래의 품질을 관리함

13) 노영훈(2017) pp.18~19.

14)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8, pp.60~81.

15) OECD(2018) pp.66~67

나.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수익모델¹⁶⁾

- 공유경제 사업모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본사(headquarters)는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나 통제시스템(control system)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과 인사관리, 플랫폼 등의 기술개발, 연구개발, 글로벌 마케팅과 영업 관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함
 - 본사는 플랫폼 사업의 네트워킹과 품질 개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 이용후기(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로부터의 후기)와 서비스 평점(rating)을 관리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 알고리즘과 서비스 개선을 관리함
 - 본사는 앱 호스팅,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서버 관리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함

- 한편, 플랫폼 사업자는 본사 외에도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자회사를 두기도 하는데, 자회사는 특정 지역에 맞도록 플랫폼 환경(언어 등) 설정 및 부분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현지 마케팅과 고객 지원 등의 서비스를 담당함
 - 특정 국가에서의 거래는 자회사가 제공하는 현지화된 플랫폼에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짐
 - 서비스는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나, 거래 대금은 개인소비자가 사전에 관련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회사에 지급하고 자회사가 개인공급자에게 플랫폼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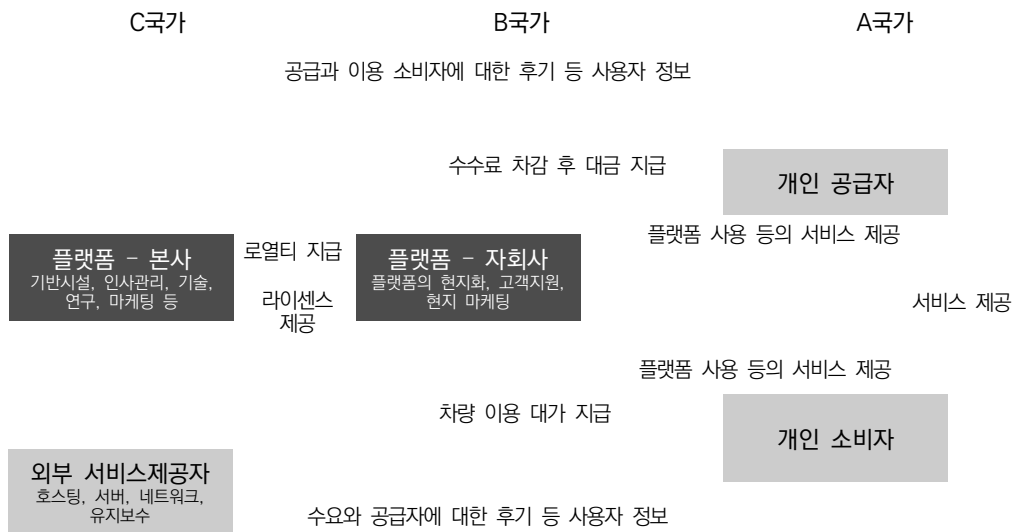
-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용자인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 모두로부터 플랫폼 사용 대가로 이용대가의 일정비율로 수수료(commission)를 받음
 - 수수료의 산정은 플랫폼 사업자마다 상이하나 차량공유 플랫폼의 수수료는 서비스 공급가액의 20~30%까지 높게 책정되기도 함
 - 개인소비자의 서비스 이용대가는 해당 지역 내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의 수요

16) OECD(2018) pp.66~67

와 공급 수준에 따라 변동하거나(우버, Didi Chuxing, 리프트, 올라 등) 개인 공급자의 비용을 추정하여 책정되기도 함(BlaBlaCar)

- 개인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앱에 등록된 개인 신용카드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대금을 지불하며, 개인공급자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이용대금 중 플랫폼 수수료가 제외한 대금을 지급받음
- 일반적으로 개인소비자는 앱 등록 시 개인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대금이 자동 청구됨

[그림 11-4] 공유경제의 사업모형



자료: OECD(2018), p.67.

다. 플랫폼 사업자의 지적재산권과 데이터 활용

- 플랫폼 기업은 앱 아이콘과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특허권(patent)과 상표권(trademark)을 보유하며, 지적재산권의 소유주는 본사일 수도 있으나 해외 자회사일 수도 있음
 - 특허권은 주로 사업방식과 관련한 실용신안권(utility patent)임
 - 예를 들어, 차량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공급자의 위치 확인, 공급자 탐색 시스템과 탐색 방법 등이 실용신안권에 해당함
 - 또한 플랫폼 기업의 로고, 앱 아이콘과 디자인이 상표권에 해당함

- 플랫폼 사용자인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는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가격 책정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는 등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개인소비자의 탑승지와 목적지 등 탑승 기록, 대금지급 세부내역,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됨
 - 차량공유 플랫폼의 경우, 탑승객과 차량 운전기사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개인 소비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에 보다 많은 차량이 공급되도록 조정함
 -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탑승객의 수요와 차량 운전기사의 공급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 알고리즘(surge pricing)을 적용함
 - 플랫폼 기업은 개인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기를 토대로 평점(rating)을 부여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함
 - 또한,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 차량 운전기사가 이동한 시간이나 탑승 수요 정도 등의 데이터를 기업이나 정부에 제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나 신호체계 등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3. 공유경제의 조세쟁점

- 공유경제의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아직 관련 과세를 위한 제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
- 공유경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한 P2P 거래가 주요 거래 형태로, 거래당사자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지하경제(informal economy) 확대 위험과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 및 공정경쟁 관련 문제를 야기함
 - 영국 국세청의 보고서¹⁷⁾에 따르면, 영국의 공유경제활동 참여자들의 관련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유경제의 조세쟁점은 ① P2P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공급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②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플랫폼 사업자

1) 소득세

- 각 국가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법과 조세조약 등 현행 국제조세체계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소 또는 서버 등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과세를 할 수 있음
- 온라인 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른 유형의 디지털 경제와 마찬가지로

17) NatCen, *Research on the Sharing Economy*, HMRC report 453, 2017.

로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없이도 사업을 영위한다는 특징을 가짐

- 이렇듯 현행 국제조세체계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등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원천지국(소비지국)의 세수 손실과 기존 정통 경제활동과의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를 비롯한 여타 디지털경제의 가치창출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소비지국의 사용자 데이터이며, 실제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지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유사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전통 경제활동은 창출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는 반면, 디지털 사업자는 과세가 되지 않아 공정경쟁을 침해할 수 있음

- 이에 공유경제를 비롯한 디지털경제의 적절한 과세를 위해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아닌 새로운 과세연계점(nexus)을 찾기 위해 OECD와 EU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유경제를 비롯한 디지털경제의 소득세 과세방안은 크게 고정사업장 범위의 확대와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고정사업장 범위의 확대 적용 관련 논의는 G20/OECD BEPS방지프로젝트 (“BEPS프로젝트”)¹⁸⁾의 Action 7에서 다루며,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과세연계점에 대해서는 동 프로젝트의 Action 1에서 다룸¹⁹⁾

18) OECD, <http://www.oecd.org/tax/beps/>, 검색일자: 2018.6.27.

19)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III. 주요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함.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의 개인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 여타 다른 디지털경제의 경우와 같이 공유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일반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지국에 고정사업장 없이 비사업자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음
- 앞서 언급한 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소비지국의 세수 손실과 더불어 소비지국의 국내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개인들이 부담하는 조세이나,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달리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가격 측면에서 불공정 경쟁이 야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ECD와 EU를 중심으로 용역의 공급지가 아닌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부가가치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²⁰⁾

나. 공유경제 참여 개인

1) 소득세

- 현행 세법상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우버의 차량 운전기사나 에어비앤비의 호스

20)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Ⅲ. 주요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함.

트 등의 개인공급자가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이 불명확함

- 과세당국이 개인의 과세신고 여부와 관련 세법규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다면 자칫 과세누락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음

- 과세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공유경제활동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알지 못하거나 개인공급자가 소득세 신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득세의 과세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플랫폼 기업 등 공유경제활동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제3자를 이용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부가가치세

-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급자가 개인인 경우가 많아 개인공급자가 개인소비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원활하게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현행 세법상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플랫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방안이나 개인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직접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해결해야 함

-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공급자의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해 외국기업이 직접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부담하므로 개인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음

- 결국,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플랫폼 기업이나 개인공급자 중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4.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도입 현황 및 과세체계

가. 공유경제 도입 현황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규모는 정확히 추정되지 못하고 있고, 성장세 또한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공유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²¹⁾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경제는 현재 북미,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크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우리나라의 공유경제는 숙박공유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어 업무공간, 차량·주차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를 보임²²⁾
 - 우리나라의 숙박공유 서비스는 서울, 제주도, 부산 등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이 세 곳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2010년 4건에서 2018년 6월 현재 누적 기준 5만 1천건 이상으로 집계됨²³⁾

21) 나승권 외(2017), p.117.

22) Ibid.

23) AirDNA, <https://www.airdna.co/>, 검색일자: 2018.6.26.

〈표 II-4〉 국내 분야별 주요 공유경제 기업 현황

구분	주요 기업	
차량/운송	우버, 쏘카, 그린카, 풀리스, 렉시(카풀), 스쿨천사, 카모니, 학통	
주차	모두의 주차장, 셀파	
공간	개인(숙박)	에어비앤비, 투지아, 쉐어하우스 우주, 스테이즈, 컴앤스테이, 코티에이블, 다자요, 민다, 코자자, 오셰어하우스
	사무	위워크, 마이워크스페이스, 스페이스 클라우드, 마이 카고, 제3공간, 스토어쉐어링, 코업, 얼라이브스페이스, 앨리스
	기타	프리바아워, 인터스타일 다이닝, 버스킹티비
중고거래	픽셀, 키위마켓, 빌리지	
재능공유	크레백스, 재능넷, 에디켓, 크로스레슨, 라쉐, 인스앤인스, 메이커스, 런던브로스	
취업중개	코멘토, 원티드, 타임맨	
금융	루트에너지, 하나스, 크라우드	
의류	WEARTRIP, 더클로젯, 렉스타일러, 원투웨어, 리틀런웨이, 열린옷장, 키플, Laxus, 착한한복, 디프	
기타	애니파이(와이파이), 콜즈다이나믹스(협업기반 아이디어 실행플랫폼), 레츠코(레고), 맘시터(베이비시터), 플레이플래닛(여행서비스), 버프(물류서비스), 뽀어드림(생활대행서비스), LYCLE(자전거공유), 트립앨리스(여행서비스)	

자료: 나승권 외(2017), p.118.

〈표 II-5〉 국내 주요 도시의 에어비앤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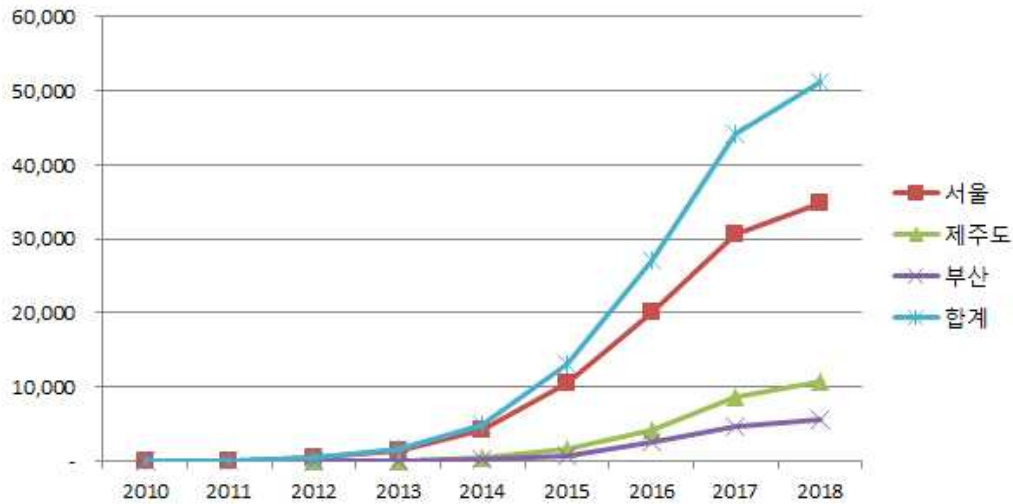
(2018년 6월 기준)

구분	서울	제주도	부산	합계
호스트 수(명)	5,141	2,642	1,218	9,001
등록 숙박시설(개)	13,543	6,927	2,672	23,142
숙박률(%)	74%	41%	48%	-
평균 숙박 요임(1박/원)	77,053	110,865	66,927	-
월평균 수익(원)	1,412,599	1,248,620	960,000	-

자료: AirDNA, <https://www.airdna.co/>, 검색일자: 2018.6.26.

[그림 11-5] 국내 주요 도시의 에어비앤비 사용 현황

(단위: 숙박건수, 2018년 6월 기준)



자료: AirDNA, <https://www.airdna.co/>, 검색일자: 2018.6.26.

나. 공유경제 과세체계 및 문제점

1) 플랫폼 사업자: 법인세

- 우리나라 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며, 여기서 국내사업장은 종속대리인²⁵⁾과 서버(server)²⁶⁾를 포함함

24)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25)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

26) 서면2팀-1953, 2005.11.30.

- 공유경제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 영위를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고 플랫폼의 서버 역시 국내에 두지 않을 수 있어, 국내 개인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급하는 수수료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주된 수익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개인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이고, 플랫폼 사업 가치창출의 핵심 요소는 국내 사용자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하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고정사업장 여부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는 대다수 국가의 문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OECD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OECD를 중심으로 고정사업장이 아닌 새로운 과세연계점(nexus)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대안적 과세방안을 도입하고 있음

2) 플랫폼 사업자: 부가가치세

-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거래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음²⁷⁾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를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정의하고²⁸⁾, 과세대상 거래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함²⁹⁾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27) 삼일아이닷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해설.

28) 「부가가치세법」 제3조.

29) 「부가가치세법」 제4조.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³⁰⁾”로 규정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플랫폼을 통해 국내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14년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부 전자적 용역³¹⁾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³²⁾할 수 있으나, 공유경제 플랫폼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현행법상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³³⁾
 -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면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를 하는 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아닌 용역의 소비지국에서 과세되도록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으며, EU와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적 용역의 소비지국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³⁴⁾

3) 공유경제 참여 개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 개인에 대한 소득세 측면에서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공급자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신고 대상인지와 소득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30) 「부가가치세법」 제20조.

3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이나 이러한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32)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2.

3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 2015.10.05

34) 김빛마로·유현영·김민경,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p.88~93.

- 주로 거래되는 서비스 유형별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쟁점이 다를 수 있어, 거래 규모가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세무신고 방법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적절한 납세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급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개인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숙박공유를 통한 주택의 임대가 숙박업 또는 주택임대업으로 구분될 소지가 있으며 양쪽 모두 숙박공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업종 구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부담 세금이 다름
 - 주택임대업이나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숙박공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주택임대업인 경우와 비교해 숙박업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며, 숙박업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숙박공유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의 도시민박업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있으나, 도시민박업 규정이 숙박공유에 바로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에서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도시민박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도시민박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할 시(또는 군·구)에 승인을 받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그러나 도시민박업 규정은 호스트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게스트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을 통해 숙박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모든 호스트를 제한하지 못함
 - 「관광진흥법」에서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도시민박업에 관한 규정이 숙박공유에 적용될 수 있으나 모든 호스트가 도시민박업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님

- 도시민박업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호스트가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세원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쉽지 않으며, 공유경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모든 거래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플랫폼 거래에 부업이나 파트타임으로 참여한 개인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하기는 무리가 있음
 - 예를 들어, 숙박공유의 경우 호스트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숙박공유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수익창출이나 사업목적 없이 문화교류 등을 위한 목적에서 간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디지털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 간 직접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세청이 개별 개인에 대한 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과거 개인 간 거래를 중간에서 관리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던 기업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과세당국이 직접 다수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원을 포착하고 관리해야 될 상황에 직면함
- 제4장에서 현재 국내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과 관련된 현행 세법 규정을 살펴봄
 -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음

Ⅲ. 주요국의 플랫폼 사업자 관련 과세제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의 조세쟁점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문제 그리고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공급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로 구분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음

1. 법인세

가. OECD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 논의

1) 2015년 Action 1 최종보고서

- OECD는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Action 1)”³⁵⁾에서 공유경제를 포함한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함
- 한편,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Action 7)”³⁶⁾와 그에 따른 2017년 OECD모델조세조약 개정본에서는 디지털경제 과세와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해 다룸³⁷⁾

35) OECD, <http://www.oecd.org/ctp/addressing-the-tax-challenges-of-the-digital-economy-action-1-2015-final-report-9789264241046-en.htm>, 검색일자: 2018.6.28.

36) OECD,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Action 7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37) Action 7과 그에 따른 2017년 OECD모델조세조약 제5조 개정본에서는 디지털경제와 관련성이 있는 종속대리인 조항, 예비적·보조적 조항 그리고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등록 조항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음. 다만,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이슈는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

- 2015년 발표한 Action 1 최종보고서³⁸⁾에서는 현행 국제조세체계하에서 외국법인의 원천지국 법인세 과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정사업장 이슈 외에도 디지털 경제 과세를 위한 새로운 과세연계점(nexus)에 대해 논의함³⁹⁾
- 새로운 과세연계점(nexus)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인(factors)을 기반으로 디지털 사업자가 소비지국(원천지국)에 과세대상이 되는 “중요한 경제적 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함⁴⁰⁾
 - ① 매출 요인(revenue-based factor)
 - ② 디지털 요인(digital factor)
 - ③ 사용자 기반 요인(user-based factor)
 - ④ 매출 요인과 기타 요인의 결합(combinations of the revenue factor with the other factors)
- ① 매출 요인: 특정 국가에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존재한다는 가장 분명한 잠재적 지표 중 하나임. 매출요인 독립적으로는 과세연계점을 찾기에 충분하지 않으나, 다른 요인과 결부시킬 때 과세연계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 ② 디지털 요인: 오프라인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디지털경제 역시 특정 국가에서 경제적 실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디지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함. 현지 도메인(domain), 현지화된 디지털 플랫폼과 결제수단 등은 디지털 사업이 특정 국가와 갖는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③ 사용자 기반 요인: 디지털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⁴¹⁾의 중요

38)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39) OECD(2015a), pp.106~115.

40) OECD(2015a), pp.107~111.

성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의 사용자 기반과 관련 사용자 정보(user data)는 특정 국가에서의 중요한 경제적 실재의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사용자 기반의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특정 국가에서의 실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 온라인 계약 건수,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양 등이 있음

- ④ 매출 요인과 기타 요인의 결합: 특정 국가에서 일정 기준(threshold)을 초과하는 매출 규모와 함께 충분한 디지털 요인 또는 사용자 기반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서 과세연계점이 되는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디지털 사업자가 한 국가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을 꾸준히 창출하고, 그 국가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현지화된 디지털 플랫폼에 개인 자료를 입력하고 현지화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과세연계점이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Action 1 최종보고서는 과세연계점 논의와 함께 과세연계점이 성립된 상황을 가정하고 특정 국가의 과세대상 귀속소득의 계산방법론 그리고 원천징수와 균등세(equalisation levy) 등 구체적인 과세형태와 징수 방법에 대해 논의함⁴²⁾

-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과 관련하여서 부분할당법(fractional apportionment methods)과 수정 간주이익법(modified deemed profit methods) 등에 대해 논의함
- 구체적인 법인세 과세방안으로 원천징수세를 이용하는 방법과 법인세의 대안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비세(excise) 형태로 과세하는 균등세를 소개하면서 각 대안의 장점과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함

41) OECD(2015a), p.65, pp.70~71.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들의 경제행위가 다른 사용자들의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참여, 통합 및 시너지로 이해할 수 있음. 네트워크 효과의 예로 컴퓨터의 OS(operating system) 프로그램, 미디어 공유 사이트(사용자가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여 공유하는 웹사이트), 사물인터넷 등이 있음.

42) OECD(2015a), pp.111~117.

- 다만, Action 1 최종보고서는 디지털경제의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국제 차원의 합의된 접근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은 BEPS프로젝트의 모든 참여국(BEPS Inclusive Framework)의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관련하여 추후 경과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함

2) 2018년 Action 1 경과보고서⁴³⁾

- 2020년까지 디지털경제에 대한 국제 차원의 합의된 법인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OECD는 2018년 3월 16일 Action 1의 경과보고서 (interim report)⁴⁴⁾를 발표함
- 2018년 경과보고서는 디지털경제의 특징과 조세 쟁점을 논의하고, 디지털경제에 대한 여러 국가의 법인세 과세방안의 도입 현황과 2020년 최종 과세방안의 합의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 등을 소개함
 - 디지털경제 사업모형의 주요 세 가지 특징으로 ① 분산화된 국제적 규모의 경제 (Cross-jurisdictional scale without mass) ②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 ③ 데이터 활용과 사용자 참여 등을 제시함
- 디지털경제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관련하여 본 경과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취하고 있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정책을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함⁴⁵⁾

43) 유현영·홍민옥, 「디지털경제 체제하의 소득세 과세 이슈와 시사점: 최근 OECD와 EU의 논의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44)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8.

45) OECD(2018), pp.133~159.

-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안적 기준 적용(alternative applications of the PE threshold)
 - 원천징수제도의 이용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 기준 과세(turnover tax)
 -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안
- 첫째,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안적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 사업장(digital presence)’ 또는 ‘서비스 고정사업장(service PE)’의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사업장(또는 “온라인 사업장”)’ 개념은 물리적 관리장소 없이도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해외 기업이 특정 국가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창조·유지할 때, 그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현재 이스라엘, 인도,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서 관련 제도가 도입됨
 - ‘서비스 고정사업장’은 UN모델조세협약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물리적 실체는 고정사업장의 유무 판단에 고려되지 않으며 디지털 수단 등을 통해 실제 원천지국의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고정사업장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련 개념이 적용되고 있음
- 둘째, 해외 기업이 디지털 사업을 통해 원천지국에서 창출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음
- 사업소득, 자문수수료, 온라인 광고 대가 등 기존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부재 시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하여 내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상 해당 소득을 과세 가능한 사용료 등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등 원천지국 과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대응은 대부분의 경우 내국세법에 반영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OECD모델조세협약에는 디지털 기반 소득의 재분류를 통한 원천지국 과세근거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UN모델조세협약은 2017년 개정 시 해당 접근법을 추가한 바 있음

- 셋째,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소득세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재화 또는 서비스 기반 소득에 대해 '매출액 기준 과세(turnover tax 또는 excise tax)' 제도를 도입함
 - 매출액 기준 과세는 기존의 소득세 계산과는 달리 해외 기업이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를 물리적 장소 없이 특정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천지국에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임
 - 최근 인도,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거래는 서로 상이함

- 마지막으로 소개된 조세정책은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의 세원 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디지털 사업체를 특정하지는 않음
 - 이러한 대응방안의 대표적인 예로 영국과 호주의 우회소득세(diverted profits tax)와 미국의 세원잠식 및 남용방지 규정 등이 있음

- 한편, 본 경과보고서는 2020년 BEPS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최종 합의될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조세규범 채택 이전 각 국가들이 한시적(interim)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으로 다음을 제시함⁴⁶⁾
 - 조세조약과 WTO 규정 및 EU 지침 등 기존의 국제 규범에 부합할 것
 -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추후 국제 차원에서 합의될 제도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 디지털 비즈니스 중 고위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적용할 것
 -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나친 조세 부과를 지양할 것
 - 적용기준(threshold)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에 과도한 납세협력부담을 주지 않을 것

46) OECD(2018), pp.180~190.

○ 납세행정비용 및 제도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

- Action 1 최종보고서와 경과보고서는 공유경제에 특정된 조세문제를 다루진 않으나,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경제의 일반적인 조세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룸
- 특히, 2020년 최종 합의될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과세연계점과 Action 1 경과보고서가 제시하는 한시적(interim) 대응방안들과 관련 정책의 설계 원칙은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 및 공유경제의 소득세 문제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나. EU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지침⁴⁷⁾

- EU는 2015년 디지털경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지침을 채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디지털경제의 법인세 과세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는 등 디지털경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함
- OECD가 디지털경제 소득세 관련 경과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3월 21일 디지털경제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부과를 위한 근본적 과세방안과 한시적인 과세방안에 관한 두 개의 EU지침에 대하여 제안서를 발표함⁴⁸⁾
 - EU는 대규모 디지털상거래 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 조세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정과세(fair tax)를 위한 새로운 과세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힘
 - 두 제안서는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며, EU위원회에서 채택될 경우 EU 회원국은 2019년 말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47) 유현영·홍민옥(2018).

48)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 검색일자: 2018.6.29.,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에서 재인용.

종료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 장기적 해결 방안: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관련 지침⁴⁹⁾

- 첫 제안서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관련 지침으로 EU가 제시하는 근본적 과세방안이며,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디지털 사업장(또는 가상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특정 요건이란 특정 EU 회원국에서의 ① 연간 매출액이 700만유로를 초과하거나, ②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가 연간 10만명을 초과하거나, ③ 디지털 기업이 체결하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사업계약이 연간 3천건을 초과한 경우임
- EU의 디지털 사업장 관련 지침은 OECD의 Action 1 최종보고서에 논의한 새로운 과세연계점 요인 중 매출요인에 디지털 요인과 사용자 요인을 결합한 형태로, 추후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 차원의 새로운 과세연계점 논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한시적 대응방안: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지침⁵⁰⁾

- 디지털 사업장 관련 지침은 EU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소득세 과세방안이 나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 합의에 의한 소득세 과세방식 결정이 2020년에 계획되어 있어 그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과세방안이 필요함
 - 현재 일반 기업의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은 23.2%인 반면, 디지털 기업의 법인

49)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laying down rule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2018.

50)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2018.

세 평균 유효세율은 9.5%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⁵¹⁾ 국제적 합의를 통한 조세조약 개정 등 디지털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과세방안 이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EU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함⁵²⁾

- 이러한 배경에서 두 번째 EU지침 제안서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법인세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제안함
 - 이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EU에 균등세(equalization tax)를 도입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시적 과세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함⁵³⁾
 - 회의에 참석한 17개 국가 중 3개국 재무장관은 균등세 부과에 회의적이었으며, 나머지 국가의 재무장관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OECD나 G20에서 보다 근본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 디지털 서비스세란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온라인 광고, 유저 데이터 판매, P2P 플랫폼 서비스 등)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법인세로, 본 제안서는 과세대상 기업과 과세대상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로 ① 사용자(us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② 사용자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P2P 플랫폼) 등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함
 -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고 EU 내 매출액이 연간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51) European Commission,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March, 2018, p.4.

52)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factsheet_digital_taxation_21032018_en.pdf, 검색일자: 2018.6.29.

53) TAX NOTES INTERNATIONAL, “Estonian Presidency Warns Against ‘Quick Fixes’ to Tax Digital Economy,” September 11, 2017, p.1057.

- EU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시 EU 회원국의 추가적인 법인세 수입을 연간 50 억유로로 추정함
 - 한편, 기존 국제조세체계와 각종 국제 법규와의 충돌 소지와 관련해서 EU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EU 또는 WTO의 무차별(non-discrimination) 조항을 위배하지 않으며, 이중과세 역시 일부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임⁵⁴⁾
 - 디지털 서비스세는 EU 회원국 및 비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로 EU 및 WTO의 무차별조항을 위배하지 않음
 - 다만, 디지털 서비스세는 소득공제(비용 손금) 등의 형태로 이중과세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⁵⁵⁾
 - EU가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세는 OECD가 제안한 새로운 과세연계점 요인 중 매출액, 디지털, 사용자 요인을 결합한 형태이고, OECD가 권고한 한시적 대응방안의 주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존 국제조세규범에 부합하고, 대규모 다국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도가 단순하여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등 OECD가 제시한 한시적 과세방안의 기본 설계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EU 내에서도 아일랜드 등을 중심으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움직임에 부정적인 국가가 존재하며, 미국 또한 자국 내 기업의 세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입장을 감안할 때 최종 채택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⁵⁶⁾
 - EU의 두 제안서는 공유경제 과세문제에 대해 특정하고 있지만, 제시된 내용은 모
-
- 54)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2141_en.htm, 검색일자: 2018.6.29.
- 55)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8/03/etf-360-oecd-and-eu-council-digital-economy.html>, 검색일자: 2018.7.2.
- 56) The Irish Times,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economy/the-digital-services-tax-hasn-t-gone-away-1.3438390>, 검색일자: 2018.6.29.

두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으로, 두 지침이 채택되는 경우 에어비앤비 등 대규모 다국적 플랫폼 사업자는 EU에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이탈리아⁵⁷⁾

- 이탈리아는 2018년 예산법(Budget Law)에 2019년부터 시행될 ‘디지털거래세 (the Levy on Digital Transactions)’와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을 도입함

1) 디지털거래세

- 이탈리아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용역에 대해 거래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3%를 디지털거래세로 부과하기로 함
 - 여기서 전자적 수단을 통한 용역이란 EU 지침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급되는 용역으로, 그 성격상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을 말함⁵⁸⁾
- 디지털거래세는 이탈리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용역 계약건수가 연간 3,000건 이상인 내국 또는 외국기업으로 하며, 과세대상 거래는 사업자 간 거래 (business-to-business, B2B)로 한정함
 - 인도의 균등세와는 달리 이탈리아의 디지털거래세는 내·외국법인 모두에게 차별 적용됨

57) OECD(2018), p.143;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taly-enacts-web-tax-and-new-pe-definition>, 검색일자: 2018.7.3.

58) European Commission,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laying down implementing measures for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recas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2011:077:FULL&from=EN>, 검색일자: 2018.7.1.

- 디지털 수단을 통한 재화의 공급과 B2C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 장소, 공급자의 거주지는 고려대상이 아님
- 디지털거래세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나, 징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디지털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6일까지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디지털거래세는 ‘거래세(transaction-based tax)’로 조세조약 대상 조세가 아니며, 법인세 등 다른 조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불가함
 - 법인세 목적상 공제가능한 비용이나, 법인세를 포함한 이탈리아의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불가함
 - 외국법인의 경우 디지털거래세의 공제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르는 것임
- 이탈리아 정부는 디지털거래세 도입으로 연간 1억 9천만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탈리아의 디지털거래세는 B2B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대부분의 거래가 B2C 거래인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2) 고정사업장

- 디지털거래세 도입과 함께 고정사업장 정의에 ‘중요한 경제적 실재’ 개념을 도입하여, 이탈리아에서 물리적 관리장소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에 더하여 물리적 장소 없이 중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적 실체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매출액, 고객의 수

등이 경제적 실질의 지표가 될 수 있음

- 다만, 본 제도는 내국세법에 따른 규정으로, 조세조약 체결국에 거주하는 외국 디지털 법인의 고정사업장 판정은 해당 조세조약을 따라 판단하게 됨

라. 이스라엘⁵⁹⁾

- 이스라엘 과세당국은 2016년 4월 11일 외국법인의 이스라엘에서의 디지털경제 활동에 대한 과세 규정을 발표함
- 동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법인은 이스라엘에 중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또는 디지털 사업장(digital presence)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 이스라엘 거주자와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 관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 다수의 이스라엘 거주자가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온라인 서비스가 이스라엘 사용자를 위해 현지화된 경우
 - 외국법인의 매출액이 이스라엘 사용자의 활동 또는 이용 정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 상기 규정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과세당국이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지털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요건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계약의 수 또는 사용자 규모 등은 제시하지 않음
- 이스라엘의 디지털 사업장 규정은 OECD의 과세연계점 요인 중 매출액 요인과 사

59) EY,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sraeli_Tax_Authorities_publish_official_circular_on_internet_activity_of_foreign_companies_in_Israel/\\$FILE/2016G_00570-161_Gbl_Israeli%20TAs%20publish%20official%20circular%20on%20internet%20activity%20of%20foreign%20companies%20in%20Israel.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sraeli_Tax_Authorities_publish_official_circular_on_internet_activity_of_foreign_companies_in_Israel/$FILE/2016G_00570-161_Gbl_Israeli%20TAs%20publish%20official%20circular%20on%20internet%20activity%20of%20foreign%20companies%20in%20Israel.pdf), 검색일자: 2018.7.2.

용자 및 디지털 요인을 결합한 형태이나, OECD의 권고사항 중 최소 매출액 기준 (threshold)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 한편, 동 규정은 내국세법상의 규정으로 조세조약 체결국에 거주하는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디지털 법인에는 기존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조항 중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게 됨

마. 슬로바키아⁶⁰⁾

- 슬로바키아 과세당국은 2017년 플랫폼을 통해 슬로바키아에서 숙박 및 운송 서비스 중개를 하는 외국법인은 슬로바키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⁶¹⁾
 -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며, 2018년 3월 슬로바키아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
- 본 규정은 별도의 적용기준(threshold) 없이 플랫폼을 통해 숙박 및 운송 서비스 계약을 중개하는 하는 모든 외국법인에 적용되며, 관련 조세조약과도 무관하게 적용됨
- 본 규정의 적용으로 고정사업장 또는 디지털 고정사업장(digital PE)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외국법인은 슬로바키아에서 고정사업장을 등록을 통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60) "Slovak Republic - Guidelines for taxation of non-resident operators of digital platforms," 24 Apr. 2018, News IBFD.

61) "Slovak Republic - Draft amendments regarding PEs to be approved by parliament," 11 Dec. 2017, News IBFD.

- 해당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을 통해 숙박 및 운송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됨

바. 인도

1) 균등세⁶²⁾

- 인도는 2016년 4월부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에 대해 서비스 대가의 6%를 균등세로(equalisation levy) 과세함
 - 이는 BEPS프로젝트 Action의 디지털경제 과세방안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음
- 균등세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광고를 위한 장소, 시설 등의 공급 서비스 중 B2B 거래에 한하여 부과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B2C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추후 과세당국은 과세대상 거래를 추가할 수 있음
 - 인도 거주자(외국법인의 인도 내 고정사업장 포함)로부터 연간 수취하는 대가가 10만루피(1,500달러 상당) 이하인 경우 균등세가 면제됨
- 균등세는 조세조약 대상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며, 외국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WTO의 무차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⁶³⁾
 - 균등세는 소득세와는 별도의 거래세로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조정 대상 조세가

62) OECD(2018), p.142.; EY,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Template_Equalisation_Levy_Alert.pdf/\\$FILE/Template_Equalisation_Levy_Alert.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Template_Equalisation_Levy_Alert.pdf/$FILE/Template_Equalisation_Levy_Alert.pdf), 검색일자: 2018.7.3.

63) OECD(2018), p.184

아니기 때문에 균등세를 납부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중과세 위험이 존재함

- 이탈리아의 디지털거래세와는 달리 외국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WTO의 무차별조항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⁶⁴⁾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중 고정사업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균등세가 아닌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과세됨
- 인도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약 34억루피(약 4,700만달러)의 균등세를 징수했다고 발표함
- 인도의 균등세는 현재 B2B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거래가 B2C 거래인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됨

2)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대⁶⁵⁾⁶⁶⁾

- 인도는 2019년 예산(Budget)에 중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개념을 기존 고정사업장 규정에 적용하여 외국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함⁶⁷⁾
- 본 규정은 모든 종류의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며, 2019년 4월 1일부로 발효됨
-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선 매출액 기준과 사용자 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중요한 경제적 실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함

64) 유현영·홍민욱(2018), p.10. 이탈리아의 경우 EU의 무차별 규정에 위배될 소지를 고려하여 2019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서비스세의 적용 대상에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포함하였음.

65) MNE Tax, <https://mnetax.com/india-budget-advances-virtual-digital-pe-concept-tax-non-resident-business-25849>, 검색일자: 2018.7.2.

66) OECD(2018) p.138.

67) Government of India, Budget 2018-2019 Speech, 문단 25, <https://www.indiabudget.gov.in/ub2018-19/bs/bs.pdf>, 검색일자: 2018.7.2.

- 매출액과 사용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threshold)은 추후 도입될 예정임
- 다만, 본 제도는 내국세법에 따른 규정으로, 조세조약 체결국에 거주하는 외국 디지털 법인의 고정사업장 판정은 해당 조세조약을 따라 판단하게 됨

2. 부가가치세

가. OECD의 디지털경제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

1) 2015년 Action 1 최종보고서와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⁶⁸⁾

- Action 1 최종보고서는 디지털경제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business-to-consumer, “B2C”)의 거래가 디지털 등의 수단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함⁶⁹⁾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OECD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⁷⁰⁾을 인용하면서, 디지털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① 소비지국 과세원칙(principle of destination) ② 외국 공급자의 간편등록제를 통한 사업자등록 의무 ③ 외국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 등을 제시함⁷¹⁾
- 이에 앞서 1998년 OECD 재무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합의한 바 있음⁷²⁾

68) OECD(2015a).

69) Ibid., 문단 314, p.121.

70)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2017, 문단 33 p.126.

71) OECD(2015a), p.129.

72) OEC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1998.

- OECD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은 용역과 무형자산의 B2C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된 거소의 국가가 동 공급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디지털 서비스가 이에 해당함을 밝힘⁷³⁾
 - 본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거래에 대한 예시로 공유경제 플랫폼의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서비스 예시로서 플랫폼 서비스가 상기한 원칙에 적용되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음⁷⁴⁾
 -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영화, TV쇼, 음악 등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 데이터 저장(storage), 온라인 게임 등을 디지털 서비스의 예시로 들고 있음
- Action 1 최종보고서와 OECD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B2C거래의 소비자 과세원칙 외에도 외국 기업의 간편화 사업자 등록 등 실제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등록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2) 2017년 국제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⁷⁵⁾

- OECD는 Action 1의 실행 패키지(implementation package)의 첫 보고서로 2017년 10월 24일 『국제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⁷⁶⁾를 발표함
 - 본 보고서는 국제거래에서 용역 또는 무형자산의 공급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 거래들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방안을 논의함

73) OECD(2017a), p.69.

74) Ibid.

75)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1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76) OECD,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

- 본 보고서는 국가들의 입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않으나 정책 설계 및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함
 -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의 과세권은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국에 있는 것으로 하되, 공급받는 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무형자산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함
 - B2C 거래에서의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소비된 곳으로 하되,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로 함
 - 사업자등록 및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간소화제도 실행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정보제공의 최소화, 온라인 등록 활용, 간소화된 전자신고 및 납부제도, 온라인 장부기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함
 - 또한, 해외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등록에 대한 최소기준점(threshold)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한편, 본 보고서는 EU에서 도입한 국외 공급자의 온라인등록 제도의 운영성과를 제시하면서,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 실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함
 - EU는 간편등록제도인 mini One Stop Shop("MOSS")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MOSS 징수제도를 통해 예년 대비 총 30억유로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MOSS제도는 EU 회원국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없이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편화 제도임⁷⁷⁾
 - MOSS는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MOSS 적용 대상 용역공급으로는 전자통신, 텔레비전과 라디오, 디지털 서비스 등이 있음

77) European Commission, *Guide to the VAT mini One Stop Shop*, 2013,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telecom/one-stop-shop-guidelines_en.pdf, 접속일자: 2018.6.29.

- 지금까지 살펴본 OECD의 관련 논의는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으나,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과세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한 실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나. EU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⁷⁸⁾

- EU는 디지털경제 관련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특히 디지털경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해서도 EU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함
 - EU는 2015년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전략(Strategic for the EU Digital Single Market)’⁷⁹⁾을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행과제(Action Plan on VAT)⁸⁰⁾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은 원칙적으로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의 공급은 공급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⁸¹⁾
- 다만,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 라디오와 TV방송, 그리고 전자적 용역(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등이 비사업자 개인(non-taxable person)에게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의 항구적 주소 또는 주된 주소가 속한 국가에서 과세하는 예외 규정을 둠⁸²⁾

78) European Commission,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6L0112&from=EN>, 검색일자: 2018.7.1.

79)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shaping-digital-single-market>, 검색일자: 2018.5.9.

80)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action-plan-vat_en, 검색일자: 2018.7.1.

81) European Commission, EU VAT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 Article 43.

82) European Commission,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042/2013 of 7

- 2013년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함
- EU는 전자적 용역을 인터넷이나 전자 네트워크(electronic network)를 통해 공급되는 용역으로, 그 성격상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적으로 제공되며,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함⁸³⁾
 - EU가 제시하는 전자적 용역의 예시에는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가 상기한 원칙에 적용되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음⁸⁴⁾
- 전자통신, 방송 용역, 전자적 용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principle of destination)을 도입하면서, 이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돕고자 2015년 간편등록제도(MOSS)를 도입함⁸⁵⁾
 - 전자통신, 방송 용역, 전자적 용역 관련 공급가액이 연간 1만유로 이하인 경우 소비지가 아닌 공급지를 기준으로 과세함
- EU의 부가가치세제도 역시 OECD와 마찬가지로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으나,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한 실제적인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October 2013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as regards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3R1042#ntr1-L_2013284EN.01000101-E0001, 검색일자: 2018.7.1.

83) European Commission,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laying down implementing measures for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recas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2011:077:FULL&from=EN>, 검색일자: 2018.7.1.

84) Ibid. (11) In order to enhance clarity, the transactions identified as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should be listed without the lists being definitive or exhaustive.

85)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content/mini-one-stop-shop_en, 검색일자: 2018.7.1.

다. 일본⁸⁶⁾

- 일본은 2015년 10월부터 전자적 용역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하여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함
-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B2C 디지털 거래 관련 매출액이 연간 1천만엔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은 일본에서 사업자등록 의무와 일본 내 납세대리인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 외국법인의 디지털 거래 중 B2B 거래의 경우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연간 1천만엔 이하의 매출액 계산 시 B2B 거래는 제외함
- 일본 국세청은 일본에서 소비세가 부과되는 외국법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예시로 다음을 제시함⁸⁷⁾
 -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책, 전자신문, 음악, 비디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용역
 -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용역
 - 인터넷 광고용역
 - 인터넷 쇼핑, 경매사이트 등에서의 중개용역
 - 게임 또는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
 - 웹사이트를 통한 숙박 및 식당 예약 용역
 - 인터넷을 통한 영어교육

86) PwC, <https://www.pwc.com/jp/en/taxnews/pdf/jtu109-jun-2015-en.pdf>, 검색일자: 2018.7.1.; 김빛마로 외(2016), pp.92-93.

87)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cross-kokugai.pdf>, 검색일자: 2018.7.3.

- 상기에 열거된 디지털 서비스는 예시 목적으로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용역거래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숙박 및 식당 예약을 구체적으로 예시에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함

라. 호주⁸⁸⁾

- 호주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전자적 용역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디지털 상품(product)과 서비스에 대한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함
- 호주에서의 B2C 디지털 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연간 7만 5천호주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은 호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의무를 부담함
 - B2B거래는 호주에서의 GST 대상이 아님⁸⁹⁾
 - 거래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개별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GST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함
 - 외국 디지털사업자는 간편등록제도를 통해 GST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⁹⁰⁾
- 호주 과세당국은 GST 과세대상이 되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나, 재화나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product)과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됨
 - 호주 국세청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예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수단으로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웹디자인 또는 웹 출판 서비스, 그리고 법률, 회계, 또는 기타 유사한 컨설팅 제공 등이 있음

88) G. Mann, *Australia - Goods and Services Tax*, Topical Analyses IBFD (accessed 3 July 2018), 3.5. Importation.

8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In-detail/GST-on-imported-services-and-digital-products-for-Australian-businesses/>, 검색일자: 2018.7.3.

9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imported-services-and-digital-products/registration/#>, 검색일자: 2018.7.3.

- 상기에 열거된 디지털 서비스는 예시 목적으로, 디지털 수단을 통한 용역거래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숙박 및 식당 예약을 구체적으로 예시로 든 것은 주목할 만한

마. 이스라엘⁹¹⁾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과세당국은 2016년 4월 외국법인의 이스라엘에서의 디지털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규정을 발표함
- 동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 디지털 사업장(digital presence)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스라엘에 납세대리인을 선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이스라엘 부가가치세법은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 지점, 디지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간주함
-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편의를 위한 별도의 간소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91) EY,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sraeli_Tax_Authorities_publish_official_circular_on_internet_activity_of_foreign_companies_in_Israel/\\$FILE/2016G_00570-161_Gbl_Israeli%20TAs%20publish%20official%20circular%20on%20internet%20activity%20of%20foreign%20companies%20in%20Israel.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sraeli_Tax_Authorities_publish_official_circular_on_internet_activity_of_foreign_companies_in_Israel/$FILE/2016G_00570-161_Gbl_Israeli%20TAs%20publish%20official%20circular%20on%20internet%20activity%20of%20foreign%20companies%20in%20Israel.pdf), 검색일자: 2018.7.2.

3. 소결

가. 법인세

- OECD는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하는 디지털경제 전반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서 기존 고정사업장을 확대하는 새로운 과세연계점(nexus)의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여러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과세방안을 유형별로 나누어 소개함
 - 새로운 과세연계점의 주요 요인으로 매출, 디지털, 사용자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매출 요인과 다른 요인들의 결합된 형태에 대해서 논의함
 - 2020년까지 국제적 차원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방안을 ①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안적 기준 적용 ② 원천징수제도의 이용 ③ 매출액 기준 과세(turnover tax) ④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특정한 과세방안 등 4가지로 분류함
- 지금까지 각국의 국외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을 살펴보면 매출액 기반 과세제도의 도입과 고정사업장의 대안적 기준 적용(과세연계점)을 통한 과세방안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먼저,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를 도입한 사례로는 EU, 이탈리아, 인도 등이 있으며, 각 제도들은 국외 디지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점을 보임
 - EU 지침은 법인세 성격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인 반면, 이탈리아와 인도는 모두 거래세 형태로 도입됨
 - EU 지침과 이탈리아는 내·외국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반면, 인도의 균등세는 외

국법인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WTO의 무차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EU 지침은 B2C와 B2B 거래 모두를 과세대상 거래로 하나, 이탈리아와 인도의 경우 B2B거래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 여부는 불투명함
 - EU 지침과 이탈리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경제활동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적용기준(threshold)을 높게 설정하였으나, 인도의 경우 적용기준이 낮아 소규모 사업자도 과세될 수 있음
-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안적 기준을 마련한 사례로는 EU,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인도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제도들은 과세연계점의 3가지 요인 중 매출액과 다른 요인을 결합한 과세연계점을 기반으로 법인세 과세 근거를 마련함
- EU, 이탈리아, 인도는 매출 요인에 사용자 요인을 결합한 과세연계점을 도입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출, 사용자, 디지털 요인을 모두 고려함
 - 반면, 슬로바키아는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 및 운송 서비스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EU만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음
- 각 제도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 중에는 EU의 디지털 서비스세만이 공유경제 과세에 적합한 반면, 고정사업장 기준의 대안적 적용 제도들은 대체로 공유경제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 중 이탈리아의 디지털 거래세와 인도의 균등세는 B2B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B2C 거래가 대부분인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공급자 및 개인소비자 간 거래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반면, 고정사업장의 대안인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들은 디지털경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으로,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에 보다 용이함

- 슬로바키아의 디지털 고정사업장 제도는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숙박 및 운송 관련 중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표 III-1〉 디지털경제에 대한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 국제비교

구분	EU지침	이탈리아	인도
도입 연도	2020년 예정 ¹⁾	2019년 예정	2016년
조세 형태	디지털 서비스세 (법인세)	디지털 거래세 (거래세)	균등세 (거래세)
납세의무자	•내·외국법인 모두	•내·외국법인 모두	•외국법인
과세대상 거래	•B2C, B2B 거래 모두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사용자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	•B2B 거래만 과세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B2B 거래만 과세 •온라인 광고 관련 장소, 시설 서비스 (추후 추가 가능)
공유경제 플랫폼 과세 여부	•과세	•과세 불확실	•과세 불확실
세율	•매출액의 3%	•매출액의 3%	•매출액의 6%
납부방식	•특정하지 않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원천징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원천징수
적용 요건	•전세계매출액 연간 7억 5천만유로 초과 및 EU 내 연간 매출액 5천만유로 초과	•연간 서비스 계약이 3천 개 이상	•연간 관련 매출이 10만 루피(약 1,500달러) 초과
이중과세 및 무차별 조항 문제	•소득세로 조세조약 적용 대상 조세 •소득공제 가능 (제한적 이중과세 조정) •내외국법인 모두에 과세하여 무차별 원칙 위배 문제없음	•거래세로 조세조약 적용 대상 조세 아님 •소득공제 가능(제한적 이중과세 조정) •내외국법인 모두에 과세하여 무차별 원칙 위배 문제없음	•거래세로 조세조약 적용 대상 조세 아님 •내국법인은 이중과세 문제없음 •외국법인의 경우 이중과세 위험 존재 •외국법인에만 적용하여 무차별 원칙 위배 소지 존재

주: 1) EU위원회의 최종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
자료: 저자 작성.

〈표 III-2〉 디지털경제에 대한 고정사업장의 대안적 기준 국제비교

구분	EU지침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인도
도입 연도	2020년 ¹⁾	2019년	2016년	2018년	2019년
과세연계점 (nexus)	디지털 사업장 (digital permanent establishment)	중요한 경제적 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중요한 경제적 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디지털 고정사업장 (digital permanent establishment)	중요한 경제적 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연계점 고려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사용자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사용자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사용자, 디지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특정 서비스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사용자 요인
적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서의 연간 매출 액 700만유로 초과; 또는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가 연간 10만명 초과 또는 • 디지털 서비스 계약이 연간 3천건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하게 그리고 지속 적으로 경제적 실체가 있는 경우 • 매출, 사용자, 디지털 요인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 관련 계약 존재 • 다수의 사용자 • 온라인 서비스의 현지화 • 매출액과 사용자의 활동 또는 이용 정도가 연관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을 통한 숙박 및 운송 서비스 증가 • 별도의 적용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별도의 적용요건 규정 없음 • 추후 매출액과 사용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도입 예정
남부방식	• 특정하지 않음	•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 인세	•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 인세	•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 인세 • 고정사업장 등록 없는 경우 원천징수	•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 인세

주: 1) EU위원회의 최종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

자료: 저자 작성.

나. 부가가치세

- OECD는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B2C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OECD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의 ① 소비지국 과세원칙(principle of destination) ② 외국 공급자의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통한 사업자등록 의무 ③ 외국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 등을 제시함
- 이러한 OECD의 권고에 따라 EU,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법인이 내국 개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역 용역에 대해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함
- EU, 일본, 호주는 해외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 중 자국 내에서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디지털 사업장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함
 - 일본의 경우 납세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하는 반면 EU와 호주는 간편등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이스라엘의 경우 디지털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하고 이스라엘 내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함
-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범위를 살펴보면,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EU, 호주, 이스라엘은 포괄적으로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를 정의함
 -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의 예시 목록에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유형인 웹사이트를 통한 숙박 및 식당 예약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 EU와 호주는 재화나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함

- 이스라엘은 디지털 사업장 개념과 연계하여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함

〈표 III-3〉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제도 국제비교

구분	EU지침	일본	호주	이스라엘
도입 연도	2015년	2015년	2017년	2016년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	모든 디지털 서비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예시 제시	재화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디지털 사업장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서비스
과세 요건	연간 매출액 1만유로 초과	연간 매출액 1천만엔 초과	연간 매출액 7만 5천 호주달러 이상	디지털 사업장 존재
공유경제 포함 여부	○	○	○	○
사업자 등록 및 VAT 신고·납부방식	간편등록제도를 통한 신고·납부	납세대리인을 통한 신고·납부	간편등록제도를 통한 신고·납부	디지털 사업장 등록 및 납세대리인을 통한 신고·납부

자료: 저자 작성

IV.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 공급자에 대한 과세제도

1. 소득세

가.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음
 - 해당 소득의 소득세 과세신고 여부와 소득구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
 - 공유경제를 통해 개인 공급자가 얻은 소득은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과세 소득 유형, 비과세 기준 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므로, 주로 거래되는 서비스 종류별로 구분하여 현행 규정을 검토해야 함

- 현재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가장 많이 거래되는 숙박공유와 차량공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한 현행 소득세 규정을 살펴봄
 - 숙박공유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차량공유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처리 방법을 살펴봄

- 주택과 차량의 공유로 얻은 소득은 현행 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독립성, 계속성과 반복성, 영리 목적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은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며, 공유경제 참여자가 얻는 소득 중 일부는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거나 영리 목적 없이 제공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간

주될 수 있음

-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의 경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성 없이 제공한 주택 임대나 차량승차 서비스가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1) 주택의 임대 -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

- 우리나라는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숙박공유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소득의 소득세 규정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이를 ‘숙박공유’로, 플랫폼을 통해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공급자를 ‘호스트’로 함

가) 임대수입의 과세

- 호스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의 정의, 관련 법률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규정에서 차이를 보임
 -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⁹²⁾을 제외함⁹³⁾
 - 주택임대업은 자기소유나 임차한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⁹⁴⁾
 - 숙박업인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주택임대업인 경우 일정 규모 미만인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세임

9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진흥법」에서 별도로 규정

93)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관할

94)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관할

- 현재 우리나라는 숙박공유 참여 호스트의 업종을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업과 숙박업에 대한 관련 소득세 규정을 모두 살펴봄

① 주택임대업

- 숙박공유를 통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세가 과세됨
 -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에 열거된 업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며, 임대업을 사업소득 과세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어⁹⁵⁾ 주택 임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임
 -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임대로부터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⁹⁶⁾면 비과세됨⁹⁷⁾
 - 1주택인 경우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소득은 과세됨
-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나, 2천만원 이하면 2018년까지는 비과세하고 2019년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⁹⁸⁾
 - 종합과세인 경우 결정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 후 소득세 누진세율(6~4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액을 빼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함
 - 분리과세인 경우 결정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60%와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함⁹⁹⁾

9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12호

96) 총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됨

97) 「소득세법」 【비과세소득】 제12조 제2호 나목

98)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결국 주택을 숙박공유에 사용할 경우 임대수입은 주택 수, 임대에서 얻은 총수입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얻은 임대소득은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됨
 - 또한 주택임대에서 얻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보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비과세됨

-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주택 임대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음
 -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해보험료, 이자비용, 재산세,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등임⁹⁹⁾
 - 또한,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됨¹⁰¹⁾

- 현재 등록된 소액주택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세액의 30%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¹⁰²⁾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임

- ② 사업자로 등록된 숙박시설 운영 사업자

-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등록¹⁰³⁾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¹⁰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박공유에

99) 「소득세법」 제64조의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100)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01)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 단서

10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03) 「관광진흥법」 제4조

10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참여한 호스트도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임

-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하여 숙식 등을 제공, 주민이 거주하고 세대원이 외국어서비스가 가능할 것, 그리고 도시지역의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등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¹⁰⁵⁾
- 호스트는 주택임대가 아니라 숙박업으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점검을 위해 2017년 4월과 5월 중 문화체육부가 경찰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숙박업소를 단속하기도 하였음¹⁰⁶⁾
 -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업종구분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스트는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코드번호:551005)’으로 분류함

-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 빈방 공유를 원하는 경우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함¹⁰⁷⁾
- 숙박업으로 등록된 경우 주택임대가 아니므로 주택임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얻은 수입과 비용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항목 등은 주택의 임대와 동일할 것임

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105) 이성엽(2016) p.33

106) 노영훈(2017) p.71

107) 이성엽(2016) p.33

나) 양도소득의 과세

-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¹⁰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함¹⁰⁹)
 - 다만, 이 경우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¹¹⁰)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¹¹¹)을 한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도 주택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함

- 숙박공유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도 주택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을 비과세함
 -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 지역만 해당)하면서 숙박공유를 통해 수입을 얻었다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 또한, 주택임대를 위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 지역만 해당)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을 비과세함

108)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109)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1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2) 차량 승차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 우버를 통해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공급자의 활동이 영리 목적, 계속성과 반복성, 독립성 요건이 충족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를 부담함¹¹²⁾
-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하나, 모두 개인서비스업이나 운수업에 해당할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함

3) 사업 목적 없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 계속성과 반복성, 독립성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 공유경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숙박공유에 참여한 개인공급자 중 상당수는 계속성과 반복성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보다는 문화교류 등 다른 목적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¹¹³⁾이 포함되어 있으며, 숙박공유나 차량공유 중 일부 서비스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됨¹¹⁴⁾
- 차량공유 서비스 중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 중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¹¹⁵⁾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11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11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8호

11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1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라목

-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¹¹⁶⁾한 금액임
 -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지출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타소득 항목에 대해 실제 지출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의 60~80%를 공제함¹¹⁷⁾
 - 70%(2019년부터 60%) 공제대상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됨
 -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개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음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로 종합과세됨

나. 미국

- 에어비엔비와 우버 등과 같은 대표적인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공유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국세청에 '공유경제 관련 조세센터(Sharing Economy Tax Center)'를 설치하고 공유경제활동과 관련한 세무정보와 납세를 안내함¹¹⁸⁾
 - 미국 국세청은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공유경제 활동과 관련한 소득의 세무신고 정보를 공유경제 관련 조세센터에서 제공함

-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공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개인공급자에 대한 세무 처리 위주로 살펴봄

116)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2항

117)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1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6.

- 다른 국가는 숙박공유와 차량공유 등 공유경제활동에 따라 소득유형과 세무 처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1) 소득세 신고대상 과세소득

가) 수입

- 미국 소득세법상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모든 수입은 개인소득세 신고대상임¹¹⁹⁾
 -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은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자산과 서비스도 세무상 수입에 포함됨
- 미국 국세청도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공급자의 활동이 부업, 파트타임 사업이나 현금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힘¹²⁰⁾
 - 미국은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면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¹²¹⁾하므로 공유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적더라도 비과세¹²²⁾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면 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다른 소득¹²³⁾과 합산과세함
- 다만, 거주용 주택과 별장(vacation home)을 숙박공유활동에 15일 미만 임대하거나 임대한 공급자가 얻은 거주용 주택과 별장의 임대소득은 소득세 신고 및 과세대상에서 제외함¹²⁴⁾

119) 미국 국세청, "Issue for Individuals Performing Servic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9.

120)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6.

121) 이철희(2015), p.272.

122) 미국 내국세법(IRC) 제101조부터 제140조까지 조문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

123) 미국은 소득이 과세되는 항목 15가지를 미국 내국세법(IRC) 제61조(a)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 항목이며 열거되지 않은 항목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미국은 주택을 연간 15일 미만 임대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 수입과 관련 비용은 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15일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임대일수의 10%를 넘는 기간 동안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했으면 거주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자가 얻은 수입이 플랫폼사업자의 지급조서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1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받아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지급조서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함¹²⁵⁾
- 개인이 제3자로부터 카드로 대금을 받았거나, 전년도에 Paypal 등 제3자 네트워크를 통해 받은 총대가가 2만달러를 초과하고 거래 건별 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Form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의 지급조서를 발급받음¹²⁶⁾
 - 개인공급자가 요청하면 플랫폼사업자가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공급자에게 Form 1099-K의 지급조서를 거래가 발생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발행함
 - 은행, 카드사나 Paypal 등의 업체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함
 -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 상금 등 잡소득이 6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자로부터 Form 1099-Misc(Miscellaneous Income)의 지급조서를 발급받음¹²⁷⁾
 -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Form W-2(Wage and Tax Statement)의 지급조서를 발급받음

124) 미국 국세청, "Issue for Individuals Performing Servic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9.

125)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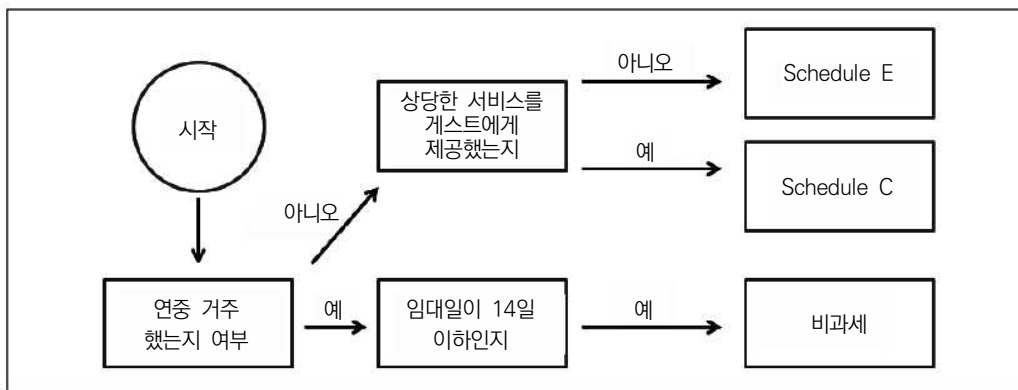
126) 미국 국세청, "Understanding Your Form 1099-K," <https://www.irs.gov/businesses/understanding-your-1099-k>, 검색일자: 2018.6.29.

127) 미국 국세청, "About Form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Info Copy Only),"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99misc>, 검색일자: 2018.6.26.

① 숙박공유

- 국세청 내용을 바탕으로 숙박공유에 참여한 호스트가 제출하는 신고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IV-1]과 같음¹²⁸⁾

[그림 IV-1] 호스트의 개인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판별과정



자료 : H&R BLOOK Airbnb Hopst 2015 Reporting guide, 노영훈(2017) 재인용

- 호스트가 주택을 사적 목적과 임대 목적으로 동시 사용한 경우 15일의 기간테스트를 수행하고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며,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면 「개인소득신고서 양식(form 1040)」을 통해 신고함¹²⁹⁾
 - 기간테스트는 15일을 기준으로 하는 테스트임
 - 이는 [그림 IV-1]에서 ‘연중 거주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해당됨
- 호스트가 주택 임대 시 임대 공간의 청소, 식사 등 호텔과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임대를 통해 얻은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부담해야 함¹³⁰⁾

128) 노영훈(2017) 및 비공개 내부자료 참조
 129) 노영훈(2017) 및 비공개 내부자료 참조
 130) 노영훈(2017) 및 비공개 내부자료 참조

-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란 청소, 게스트맞춤형 서비스, 식사와 오락 제공 등임
 - 이러한 경우 호스트는 추가손익계산서(Schedule C)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자영업세도 같이 부담함
- 호스트가 장소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면 임대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함¹³¹⁾
- 기본적인 서비스란 냉난방, 수도와 가스, 와이파이, 공용공간 청소 등을 의미함
 - 이 경우 호스트는 추가손익계산서(Schedule E)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자영업세를 부담하지 않음
- 플랫폼사업자가 지급액을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이 호스트의 수입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¹³²⁾
- 소유와 거주 요건을 만족한 주거주 주택(main home)을 양도하고 얻은 자본이득은 25만달러(부부합산신고 시 50만달러)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자본이득이 25만달러(부부합산신고 시 50만달러)까지는 비과세됨¹³³⁾
- 주거주 주택이란 양도 직전 5년의 기간 중 2년 동안 보유하고 주로 거주한 주택이어야 하며, 양도 직전 2년 동안 다른 주택의 양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어야 함
- 숙박공유에 사용한 주택이 주거주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될 것이나, 숙박공유에 사용한 주택이 주거주 주택 요건에 부합하면 주거주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될 것임
- 주거주 주택이 소득창출에 사용된 경우 소득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31) 노영훈(2017) 및 비공개 내부자료 참조

132) 노영훈(2017) 및 비공개 내부자료 참조

133) IRS, <https://www.irs.gov/taxtopics/tc701>, 검색일자: 2018.7.5. 및 오종현·송은주·정경화 (2016) p.31

② 차량공유

- 차량공유활동에 참여한 운전자가 독립계약자로 판단되면 소득세와 자영업세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됨¹³⁴⁾
- 납세자는 차량공유활동에 지출된 비용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과 거리에 따라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고 Standard Mileage공제도 적용할 수 있음¹³⁵⁾
 -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Standard Mileage Rate에 따라 2018년에는 1마일당 54.5센트의 공제를 적용¹³⁶⁾할 수 있음
 - 그 외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공유경제활동의 기간과 거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비용을 공제함

〈표 IV-1〉 미국의 차량공유에서 소요된 비용 공제 예시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는 1년 중 6개월은 개인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6개월은 공유경제활동으로 사용되어 소득을 창출함 • 공유경제활동에 이용되었던 6개월 동안 총 15,000마일을 운행하였고, 이 중 앱을 통해 교통수단으로 요청받은 것은 12,000마일임 • 이러한 경우 납세자가 소득창출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제받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비용에 대한 공제비율계산 : $12,000/15,000 \times 6/12 = 40\%$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9.

- 다만, 차량공유활동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정도의 수익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관련 수입과 비용은 기타소득(또는 잡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 과

134) 비공개 내부자료 참고

135) 비공개 내부자료 참고

136)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drop/n-18-03.pdf> 및 <https://tax.thomsonreuters.com/checkpoint-ebia-newsletter/irs-announces-2018-standard-mileage-rate-for-medical-and-moving-expenses/>, 검색일자: 2018.6.29.

세대상에 포함됨

- 수익성 여부 판단 시 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활동을 시작한 이후 5년간 3년 동안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¹³⁷⁾으로 판단함

나) 비용

① 감가상각비

- 공유경제활동이 개인공급자의 파트타임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은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공제됨¹³⁸⁾
 -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공제대상 비용으로 규정한 경우 공제가 허용됨
- 공유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비, 건물, 자동차와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은 수입에서 공제됨¹³⁹⁾
 -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할 수 없음
 - 자동차의 경우 사업 목적(투자 목적 포함)으로 사용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용만 공제가 허용됨
- 차량공유에 사용한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은 실제 차량공유활동에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함

137) Publication 535(2017) Not-for-Profit Activities,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5>, 검색일자: 2018.6.29.

13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6.

139)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6.

- 다만, 숙박공유 등을 위해 주택을 임대(별장 포함)한 경우 공제가능한 비용의 범위는 제한적임¹⁴⁰⁾
 - 주택담보대출 이자(mortgage interest), 부동산세, 재해손실, 유지비, 공공요금, 보험료,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용만 주택 임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함
 - 주택을 거주 목적과 임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한 경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총비용을 안분한 후 해당 비용만 공제함
 - 다만, 비용은 임대수입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주택 임대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주택을 연간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임대한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관련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도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함

- ② 그 밖의 사업 관련 비용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나, 사적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함¹⁴¹⁾
 - 사적 목적이란 생활비나 가족 부양 등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경우임

- 사적 용도와 사업 용도로 동시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 용도로 사용한 기간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공제됨¹⁴²⁾
 - 예를 들어, 비품, 핸드폰, 자동차, 승객이나 투숙객을 위한 식음료, 세차, 주차료, 통행료, 관련 세금 등을 위한 지출비용과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이 안분대상에 포함될 것임

140)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6.

14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9.

142)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9.

2) 소득 관련 세금 납부

- 자영업이나 임대업과 같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을 얻은 개인은 소득세와 자영업세에 대해 추정세액(estimated tax payments)¹⁴³⁾을 계산해서 연간 4회에 걸쳐 납부해야 함¹⁴⁴⁾
 - 공유경제 참여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얻으면 추정세액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
 - 다만, 근로소득자이면서 공유경제활동에 부업이나 파트타임 사업 형태로 참여한 납세자는 추정세액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의 형태로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득세나 추정세액과는 별개로 사업에서 얻은 순이익에 대해 15.3%의 세율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 함¹⁴⁵⁾
 - 자영업세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독립계약자 등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로 구성됨
 - 자영업세 세율인 15.3%는 사회보장세 12.4%와 의료보장세 2.9%로 구성됨¹⁴⁶⁾

3) 장부보관

- 과세소득 계산에 필요한 수입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최소 3년에서 영구적으로 보

143) 미국은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납세자가 부담할 연간 소득세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분기별로 세액을 추정해서 추가 납부(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과 1월 15일)할 의무가 있음

144) 미국 국세청, "Issue for Individuals Performing Servic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9.

145) 미국 국세청, "Issue for Individuals Performing Servic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9.

146) 미국 국세청, "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ment-tax-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검색일자: 2018.6.29.

관할 의무가 있음

- 거래내역, 총수입, 관련 비용 및 세액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요구됨
- 무신고의 경우 자료보관 의무기간은 영구적임

다. 호주

- 호주는 공유경제¹⁴⁷⁾ 참여자의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법률을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기존 과세체계 내에서 공유경제에 참여한 개인공급자가 얻은 소득을 과세함¹⁴⁸⁾
 - 관련 내용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의 ‘the sharing economy and tax’에서 공유경제의 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함
- 공유경제에 참여한 개인공급자는 세무신고를 위해 총수입과 관련 비용에 대한 기록을 갖춰야 함¹⁴⁹⁾
 - 총수입에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을 모두 포함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한 개인공급자의 수수료 상당액은 총수입에 포함됨¹⁵⁰⁾
 - 공유경제 사업활동에 관련있고 증빙을 갖춘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한 개인공급자의 수수료 상당액도 비용에 포함됨¹⁵¹⁾

147) 호주 과세당국은 공유경제를 앱이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음. 거래되는 유형으로 주택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임대, 차량 주차장소의 임대, 차량승차, 그래픽 디자인, 웹사이트 개발, 택배나 가구조립과 같은 서비스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함. 출처: 호주 국세청, “the sharing economy and tax,”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 검색일자: 2018.6.15.

148) 호주 국세청, “the sharing economy and tax,”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 검색일자: 2018.6.15.

149) 호주 국세청, “income from the sharing economy,”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Income-from-the-sharing-economy/>, 검색일자: 2018.6.15.

150) 호주 국세청, “the sharing economy and tax,”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Income-tax-and-GST-in-the-sharing-economy/>, 검색일자: 2018.6.18.

-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후 5년 동안 관련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¹⁵²⁾
- 거래대상 서비스(숙박, 차량, 주차장소 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므로 공유경제의 주요 거래대상인 숙박공유, 차량공유와 주차장소공유로 구분해서 소득신고 방법을 설명함¹⁵³⁾
 - 호주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자본이득 등 모든 종류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개인의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에서 사업 관련비용과 일부 법정 비용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함¹⁵⁴⁾
 - 따라서 어느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종합과세되는 데 차이가 없고, 소득 분류에 따라 분류과세되거나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등 부담 세액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부동산이나 개인보유 자산(금융자산 포함) 등을 처분하고 얻은 소득을 자본이득(또는 자본손실)으로 분류하며,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유형의 소득에서 상계하지 못함¹⁵⁵⁾
 - 자본손실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자본이득에서 공제됨

1) 숙박공유

- Airbnb, Stayz 등의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가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대할 경우 관련 수입은 임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¹⁵⁶⁾

151) 호주 국세청, “deductions you can claim,”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Deductions-you-can-claim/>, 검색일자: 2018.6.18.

152) 호주 국세청, “records you need to keep,”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records-you-need-to-keep/>, 검색일자: 2018.6.18.

153) 호주 국세청, “income from the sharing economy,”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Income-from-the-sharing-economy/>, 검색일자: 2018.6.15.

154)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 2015, pp.28~29.

155) 호주 국세청, “Capital gains tax,” <https://www.ato.gov.au/General/Capital-gains-tax/>, 검색일자: 2018.6.18.

- 관련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과세소득이 모두 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됨
- 비용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커미션, 부동산 대출이자, 전기요금, 가스요금, 부동산 관련 보험, 유지보수비용 등이 포함됨¹⁵⁷⁾
 - 총면적 대비 임대면적 비율 및 365일 중 임대한 일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임대에 사용한 면적 및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대상에 포함됨
 - 그 밖에 광고비, 은행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감가상각 자산의 가치감소분, 부동산세, 법률비용(취득 및 대출 관련 비용은 제외), 전화요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등도 포함됨¹⁵⁸⁾
- 실제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세하는 주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면세제도(exemption on a main residence)가 있으나,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숙박공유에 사용한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 양도 시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¹⁵⁹⁾
 - 첫째, 주택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본인, 배우자와 다른 부양가족의 주된 거주 목적으로 사용
 - 둘째, 수익창출(임대나 사업)에 주택을 이용하지 않음
 - 셋째, 주택이 소재한 토지가 2헥타르(20,0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 따라서 호스트가 향후 숙박공유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capital

156) 호주 국세청, "Renting out all or part of your home,"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ll-or-part-of-your-home/>, 검색일자: 2018.6.18.

157) 호주 국세청, "Deductions you can claim,"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ll-or-part-of-your-home/income-tax-requirements/>, 검색일자: 2018.6.18.

158) 호주 국세청, "Rental property expenses,"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detail/Rental-property-expenses/>, 검색일자: 2018.6.18.

159) 오종현·송은주·정경화(2016) p.61

gain)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담함¹⁶⁰⁾

- 부분적으로 숙박공유에 사용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총보유일수 중 소득창출에 사용한 기간과 총면적 중 소득창출에 사용된 면적에 해당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함¹⁶¹⁾

2) 차량공유

-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발급받아야 하며,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함¹⁶²⁾
 - 차량공유는 Uber, Gogatch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나 앱을 통해 승객이 차량 승차를 요청하면 운전자가 승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방식임
 - 다른 직업이 갖고 간헐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도 차량공유를 통해 얻은 수입을 모두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함¹⁶³⁾
- 한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운전자는 해당 운전자가 특정 법인, 파트너십이나 신탁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관련 수입과 비용은 개인소득세로 신고해야 함¹⁶⁴⁾

160) 호주 국세청, "Income tax requirements,"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ll-or-part-of-your-home/income-tax-requirements/>, 검색일자: 2018.6.18.

161) 호주 국세청, "How capital gains tax applies,"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ll-or-part-of-your-home/how-capital-gains-tax-applies/>, 검색일자: 2018.6.18.

162) 호주 국세청, "Ride-sourcing,"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ide-sourcing/>, 검색일자: 2018.6.18.

163) 호주 국세청, "Income tax and ride-sourcing," <https://www.ato.gov.au/general/ride-sourcing-and-tax/income-tax-and-ride-sourcing/>, 검색일자: 2018.6.18.

164) 호주 국세청, "Income tax and ride-sourcing," <https://www.ato.gov.au/general/ride-sourcing-and-tax/income-tax-and-ride-sourcing/>, 검색일자: 2018.6.18.

- 기업차량관리 업체(fleet service providers)에 소속된 운전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승차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업차량관리 업체와 운전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관련 수입을 개인의 과세소득이 아닌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차량공유를 통해 운전자가 얻은 수입과 관련 비용은 전부 소득세 신고대상임¹⁶⁵⁾
 - 차량 관련 비용 중 승차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는 부분만 과세소득에서 공제됨
 - 세무신고를 위해 운전자는 관련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증빙은 주행일지, 주행거리,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포함함¹⁶⁶⁾
 - 호주 국세청은 ‘ATO myDeductions’라는 앱을 제공하여 개인이 차량 관련 비용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IV-2〉 호주의 차량 관련 세무상 공제대상 비용

	공제 가능 품목	공제 불가능 품목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드소싱 운전자 준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의 교통기관을 위한 신청비 - 의료 검사비 및 범죄경력 확인 비용 - 특수 면허 비용(일반적인 운전 면허 이외의 면허) - 기타 비용: 업무 관련 운행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 주차 요금 • 통행료 • 핸드폰 비용 • 소속 단체에서 부과하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 일지를 기록하고 증빙을 갖출 때 청구가능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 차량의 감가상각비 - 운영비, 보험, 차량 등록, 수리와 유지 등 일반적인 차량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금(예: 주차 및 과속 범칙금) • 연료세 • 사적 사용 비용

자료: 호주 국세청, “라이드소싱 (Ride-sourcing) - 기본정보,” <https://www.ato.gov.au/General/Other-languages/In-detail/Korean/Ride-sourcing---the-basics---Korean/>, 검색일자: 2018. 6. 19.

165) 호주 국세청, “Ride-sourcing,”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ide-sourcing/>, 검색일자: 2018.6.18.

166) 호주 국세청, “라이드소싱 (Ride-sourcing) - 기본정보,” <https://www.ato.gov.au/General/Other-languages/In-detail/Korean/Ride-sourcing---the-basics---Korean/>, 검색일자: 2018.6.19.

3) 주차장소 공유

- Spacer, Carparkit 등의 플랫폼을 통해 주차장소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수입과 비용은 개인소득세로 신고해야 함¹⁶⁷⁾
 - 또한, 연간 수입이 75,000호주달러 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요건에 부합하면 사업자번호(ABN)를 신청해야 함
- 주차장소 임대에 사용된 주차장소나 자산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담해야 함¹⁶⁸⁾

라. 일본

- 일본 정부는 공유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
 - 급속도로 성장한 숙박공유 사업을 관리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16일 주택숙박사업법을 공포하였으며, 도도부현에 신고하면 일본 전역에서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숙박공유 영업을 가능하게 하였음¹⁶⁹⁾
 - 우버서비스는 도쿄에 한정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버를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분류하여,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불법 간주가 어렵다는 입장임¹⁷⁰⁾
 - 우버 자체는 기존의 전세승용차 및 택시사업자가 아니며, 자사에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량의 위법성 여부는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¹⁷¹⁾

167) 호주 국세청, "Renting out a car parking space,"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car-parking-space/>, 검색일자: 2018.6.19.

168) 호주 국세청, "Renting out a car parking space,"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car-parking-space/>, 검색일자: 2018.6.19.

169) 일본 관광청, <http://www.mlit.go.jp/kankocho/shisaku/sangyou/juutaku-shukuhaku.html>, 검색일자: 2018.6.25.

170) 한국교통연구원(2015), p.92

- 아직 별도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기존의 과세체계 내에서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다루고 있음
 - 공유경제 과세를 위한 쟁점 분석 및 논의를 진행 중임

1) 숙박공유

- 한편, 2018년 6월 15일부터 일본에서 주택숙박사업법(Private Lodging Business Act, minpaku)이 시행되어, 주택숙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숙소는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영업을 불가능함¹⁷²⁾
 - 주택숙박사업법은 기존 모텔 및 호텔법(Inn and Hotels Ac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숙박사업이 이 법의 적용대상임
 - 2018년 6월 14일까지 주택숙박사업에 관한 신고를 이행해야 함
 - 주택숙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 위생, 장부 비치,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응대, 사업내용에 대한 정부 보고의무 이행 등의 사항을 규정함¹⁷³⁾
 - 특히 정부에 신고한 민간주택을 숙박에 사용한 기간, 숙박 인원, 방문자의 국적 등을 2개월마다 전자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 주택숙박사업법에는 주택시설사업자, 주택시설관리업자, 주택숙박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됨¹⁷⁴⁾
 - 공유경제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시설사업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고 1년 중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주택을 임대할 수 있음
 - 주택시설사업자는 공중위생, 소음, 불만대응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171) 한국교통연구원(2015), p.82

172)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https://www.airbnb.co.kr/help/article/2177/notification-in-accordance-with-the-private-lodging-business-act---housing-accommodation-business-act---private-lodging-business-act---minpaku>, 검색일자: 2018.6.25.

173) 일본 관광청, http://www.mlit.go.jp/kankocho/minpaku/business/host/index_en.html

174) 일본 관광청, <http://www.mlit.go.jp/common/001212562.pdf>, 검색일자: 2018.6.25.

의무가 있음

- 주택시설사업자의 활동을 도도부현 지사가 감독할 의무가 있음
 - 집주인이 부재중인 경우 주택시설관리업자가 국토교통대신에 등록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관련 규정에서 주택시설관리업자의 의무사항을 제정함
 - 국토교통대신이 주택시설관리업자에 관한 감독을 실시함
 - 주택숙박중개업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주택숙박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광청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숙박자에 대한 계약 내용 설명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함
 - 관광청 장관이 주택 숙박 중개업을 감독함
- 공유경제에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는 주택숙박사업자(minpaku)에 해당하고,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주택숙박중개업자에 해당하여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할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나, 주택숙박사업자의 영업 가능 일수를 180일 이내로 제한하여 기존 공유경제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던 일부 호스트의 경우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¹⁷⁵⁾도 존재함
- 2017년 일본의 세제조사회는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소득을 과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¹⁷⁶⁾
- 세제조사회의 논의는 이후 세제개편에 반영될 예정이나 2018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음

175) Reuters, "In Japan, new rules may leave home-sharing industry out in the cold,"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airbnb/in-japan-new-rules-may-leave-home-sharing-industry-out-in-the-cold-idUSKBN1HU06C>, 검색일자: 2018.6.25.

176)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about/council/shingikai/180124/shiryo/pdf/05-3.pdf>, 2018.6.25.

- 현재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대부분 ‘잡소득’에 해당함¹⁷⁷⁾
 - 일본의 소득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포괄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도 모두 과세하며, 9가지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그 외 소득을 모두 ‘잡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함¹⁷⁸⁾
 -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호스트가 얻은 소득이 일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부동산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음¹⁷⁹⁾
 - 사업소득은 제조, 도소매업 등 특정 열거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포함됨
 -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에 의한 소득을 의미함
 - 잡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함

- 거주용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으나, 요건을 충족한 거주용 주택에 3천만엔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있음¹⁸⁰⁾
 - 거주용 주택의 특례 규정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거주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과세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됨
 - 다만,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목적에서만 입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택, 거주용 주택을 신축하는 기간 동안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등 일시적 목적으로 입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택과 별장 등 취미, 오락과 휴양을 위해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177) 국세청에서 소득분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한 사항은 아니며, 민간 컨설팅 기업에서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출처: <http://remoteaccountant.jp/en/2017/12/27/income-from-private-lodgings-in-japan-considered-as-miscellaneous-income/>, 검색일자: 2018.6.25.

178) 김완석·정지선(2013) p.58

179) 국세청에서 소득분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한 사항은 아니며, 민간 컨설팅 기업에서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출처: <http://remoteaccountant.jp/en/2017/12/27/income-from-private-lodgings-in-japan-considered-as-miscellaneous-income/>, 검색일자: 2018.6.25.

180)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302.htm>, 검색일자: 2018.7.6.

는 적용하지 않음

- 한편, 장기 거주용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인 15%¹⁸¹⁾보다 낮은 10%의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¹⁸²⁾
 - 양도소득이 6천만엔 이하인 경우 10%의 경감세율로, 6천만엔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과세함
- 거주하던 주택을 숙박공유에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한 경우도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으면 주거용 주택의 소득공제 특례와 경감세율 규정을 모두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됨
 - 주거용 주택이 소득창출에 사용된 경우 소득공제나 경감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차량공유

-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기존의 전세승용차나 택시사업자가 우버의 플랫폼을 통해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됨¹⁸³⁾
- 택시사업자의 운임체계, 업종분류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차량공유에 참여한 운전자는 개별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판단됨
 - 우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운전자가 기존 과세체계상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본은 열거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잡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차량공유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됨

181) 단기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은 30%의 세율로 과세됨

182)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305.htm>, 검색일자: 2018.7.6.

183) 한국교통연구원(2015) p.82

마. 영국

- 영국은 2017년 공유경제 과세 쟁점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도 논의 중이며,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 기존의 과세체계 내에서 공유경제 참여자가 얻은 소득을 과세함
 - 해당 논의는 영국의 조세간소화부서(office of tax simplification, OTS)¹⁸⁴⁾에서 진행 중이며, 2017년 6월 공유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¹⁸⁵⁾

1) 현행 소득세법상 신고방법

- 숙박공유나 차량공유 활동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관련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규정과 면세점이 적용됨
 - 아직 명확한 세무처리 방법이 공개되지 않았음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gig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업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며,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세를 부담하고 있음¹⁸⁶⁾
 - 숙박공유나 차량공유에서 얻은 소득은 D형 사업소득에 속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소득의 유형을 A형(부동산 임대소득), D형(사업소득(trading income) 등), E형(근로소득)과 F형(배당소득)으로 구분함¹⁸⁷⁾

184) 조세간소화부서는 국세청과 독립된 부서이며, 영국 국세청과 정부에 조세간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 개인과 법인 납세자의 세무신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185)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186)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187) 국회예산정책처(2016), p.13 및 김완석·정지선(2013), p.61

-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임대료는 A형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분류하나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면 D형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도 함
 - JustPark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주차장공유 서비스를 공급한 개인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보다 A형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분류함¹⁸⁸⁾
- 다만,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소액의 소득만 창출한 개인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함
- 차량공유 서비스를 공급한 개인이 마일리지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수입을 얻고¹⁸⁹⁾, 연간 10,000마일 이하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공유로 얻은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임¹⁹⁰⁾
 - 공유 표준공제는 부동산임대소득(property)¹⁹¹⁾ 및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당 연간 1,000파운드의 표준공제(sharing allowance)를 도입하여 소득이 1,000파운드 미만인 gig 노동자를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¹⁹²⁾
 - 표준공제는 2016년 예산안에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디지털 공유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함
 - 관련 소득이 1,000파운드 이내인 경우 해당 소득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금액이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실제비용 공제나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188)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189) 영국의 마일리지 공제(HMRC's Approved Mileage Payment Allowance)에서 규정한 수준에서 수입을 얻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함. 마일리지 공제 관련 출처: 영국 정부,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business-travel-mileage/rules-for-tax>, 검색일자: 2018.6.26.

190)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191) 영국 정부는 관련 보고서에서 에어비앤비나 유사하게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하고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192)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및 영국 정부, The role of online platforms in ensuring tax compliance by their users p.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87363/The_role_of_online_platforms_in_ensuring_tax_compliance_by_their_users.pdf, 검색일자: 2018.6.26.

가) 숙박공유

- 영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관광객에게 주거지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영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판매한 서비스로부터 얻은 소득을 포함한 자영업소득은 사업소득신고서에 기재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¹⁹³⁾
 - 소득세 신고의무는 비용공제 후 임대소득이 2,500~9,999파운드이거나, 비용공제 전 임대소득이 10,000파운드 이상인 경우에 부여되며, 공제 후 임대소득이 2,500파운드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

- 다만,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소규모 임대에 대한 특례규정(Rent a room scheme)을 활용하여 비과세될 수 있음¹⁹⁴⁾
 - 납세자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공제하지 않으면서 일괄적으로 임대수입 금액에서 7,500파운드 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소규모 임대 신고가 가능한 임대사업으로는 에어비앤비와 같이 가구가 딸린 방을 임대하거나, 게스트하우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소규모 임대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만 비과세됨
 - 임대인의 주거지가 아닌 숙소를 임대하거나, 가구가 없는 방을 임대하거나,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국 내에서 방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영국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Private Residence Relief)을 운영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한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¹⁹⁵⁾

193) 노영훈(2017), p.63

194) 노영훈(2017), p.62 및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nt-a-room-for-traders-hs223-self-assessment-helpsheet/hs223-rent-a-room-scheme-2017>, 검색일자: 2018.6.26.

- 비과세가 적용되는 5가지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동안 실제 거주한 경우, 주택의 일부를 임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활동에 주택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건물을 포함한 부지가 총 5,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주택을 매입한 경우임
- 공유경제활동에 사용한 주택은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의 일부를 임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나) 차량공유

- 차량공유 서비스의 운전자는 세무상 자영업자로 간주되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자영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각종 공적연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등도 납부해야 함
- 과표구간과 세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하지만¹⁹⁶⁾ 공적연금 등의 요율은 상이함

2) 공유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의

- 한편, 영국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공급자인 gig¹⁹⁷⁾ 노동자의 노동법상 지위가 최근 쟁점이 되었으며, gig 노동자의 신분에 따라 세무상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상 이들의 노동법상 지위 문제가 중요함
- 필리코 플러머즈(Pimlico Plumbers)사건¹⁹⁸⁾에서 gig 노동자를 근로자로 판결¹⁹⁹⁾하였으며, 우버 등 다른 사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²⁰⁰⁾

195)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tax-sell-home>, 검색일자: 2018.7.9.

196) <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18.4.20.

197) 표준 근로계약 형태를 벗어난 단기의 임시 노동력 제공으로 해석함

198) 필리코 플러머즈에서 6년 동안 일한 노동자가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병가급여와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대법원은 6년 동안 한 기업을 위해 풀타임으로 노동을 제공한 gig 노동자는 병가 및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사실상 gig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함. 근로제공 당시 해당 노동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사업자 신분이었음

- gig 노동자의 신분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득의 종류와 소득세 과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보장세 부담 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주체 등이 달라질 수 있음²⁰¹⁾
- 향후 영국 정부가 gig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gig 노동자가 얻은 소득의 세무신고와 관련한 추가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영국 정부는 과세당국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소액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할 세금을 온라인상에서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세무신고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²⁰²⁾ 납세의무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는 중임
 - 현행 세법상 소규모 사업자에 속하는 대다수의 gig 노동자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세무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함
 - 영국은 2020년까지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산화하는 Making Tax Digital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gig 노동자에 대한 세무행정 지원이 전산화 프로젝트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함²⁰³⁾
 - 과세당국은 전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산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세무신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지원함²⁰⁴⁾
 - 임대수입 등 특정 수입에 대한 매출액이 소액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만 과

199) Independent, "Pimlico Plumbers in landmark gig economy case," <https://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pimlico-plumbers-uk-supreme-court-gig-economy-employees-gary-smith-a8396471.html>, 검색일자: 2018.6.22.

200)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201)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202) 영국 정부, Unlocking the Sharing Economy - An Independent Review

203)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204)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king-tax-digital/overview-of-making-tax-digital>, 검색일자: 2018.6.26.

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무신고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²⁰⁵⁾

2.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가. 우리나라

1) 부가가치세법

- 우리나라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사업 자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인 경우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²⁰⁶⁾, 사업 목적 없이 개인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²⁰⁷⁾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목적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만으로는 사업 목적 없이 제공한 개인의 숙박공유나 차량공유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²⁰⁸⁾함

205)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206) 「부가가치세법」 제3조

207) 「부가가치세법」 제4조

208)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가) 숙박공유

-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임대는 면세²⁰⁹⁾함
-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된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숙박공유에 참여한 개인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주택 임대 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된 주택임대는 과세대상에 포함됨
- 그러나 숙박공유 플랫폼 사업자가 도시민박업으로 승인받은 호스트뿐만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호스트의 등록도 허가하고 있으며,²¹⁰⁾ 사업 목적 없이 간헐적으로 숙박공유에 참여하는 개인까지 도시민박업 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도시민박업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호스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
- 숙박공유에 참여한 개인공급자는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어, 실제 상당수의 호스트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 외 나머지 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구분함²¹¹⁾

209)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2호

210) 뉴스핌, 「에어비앤비, 불법 민박에 속수무책..무분별 규제개혁 도마 위로」,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15000200>, 검색일자: 2018.7.2.

21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제4호 및 제5호

나) 차량공유

- 차량공유의 경우 2013년 8월 우버코리아가 정식 법인으로 출범하였으나, 위법성 논란 및 안전성 문제로 인해 우버의 가장 핵심 서비스인 일반 자가용 차량을 통한 승차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임²¹²⁾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이나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알선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우버가 제공하는 승차서비스는 국내에서 위법임
 - 다만, 동법의 단서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버는 국내 시장에 카풀서비스 등 몇 가지 서비스만 제공함

- 결국, 현재 우버에서 제공하는 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은 우버에서 플랫폼만 제공하고 택시 면허 보유자가 자가용 자동차가 아닌 택시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법」에서 여객운송을 면세하고 있으나, 택시나 자동차대여사업 등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함²¹³⁾

2) 기타 다른 세목

-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외 공유경제에 참여한 개인공급자를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은 없음

212) 강상욱·서영욱·이민호(2015) pp.37~39.

21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7호

나. 미국

1) 판매세

-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각 주(state)정부는 각 도시와 지역이 선택적으로 추가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함²¹⁴⁾
 - 판매세는 주(satate)정부에서 관할하며, 주정부와 각 지역에서 부과한 판매세의 세율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루이지애나(10.02%)임
 - Alaska²¹⁵⁾,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과 Oregon 주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숙박세(Occupancy tax)

- 미국은 총 46개 주²¹⁶⁾에서 숙박공유 플랫폼 사업자가 호스트를 대신해 숙박세를 징수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함²¹⁷⁾
 - 숙박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로 숙박 서비스 사용자가 부담하나, 서비스 제공자인 호텔이나 호스트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미국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숙박공유 서비스의 경우 숙박세를 징수하

214)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ales_taxes_in_the_United_States, 검색일자: 2018.8.30.

215)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판매세는 없으나, 각 지역별로 판매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216)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Idaho, Illinois,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ississippi,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S. Virgin Island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217) 에어비앤비, <https://www.airbnb.co.uk/help/article/653/in-what-areas-is-occupancy-tax-collection-and-remittance-by-airbnb-available>, 검색일자: 2018.7.9.

고 신고·납부할 주체를 호스트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함

- 에어비앤비가 정부나 주정부와 호스트를 대신하여 숙박세를 징수하기로 협약 (agreements)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세를 대리징수하며, 사용자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하는 시점에 징수함²¹⁸⁾

□ 숙박세의 세율, 과세표준, 부과대상 서비스, 부과대상 숙박 기간 등 세부규정은 주마다 다름²¹⁹⁾

○ 같은 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기간 동안의 숙박에 대해 청소비용을 포함한 총숙박비용의 14%를 부과하나, 샌디에고의 경우 10.5%의 세율로 과세함
- 뉴욕주도 지역에 따라 30일 또는 29일까지 기간 동안의 숙박에 대해 청소비용을 포함한 총숙박비용의 3~5%를 부과함

다. 호주

1) 부가가치세법

□ 개인이나 법인이 12개월 동안 사업상 거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75,000호주달러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²²⁰⁾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함²²¹⁾

○ 매출액이 사업자등록 기준에 미달한 사업자도 필요시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218) 에어비앤비, <https://www.airbnb.co.uk/help/article/1036/how-does-occupancy-tax-collection-and-remittance-by-airbnb-work>, 검색일자: 2018.7.9.

219) 에어비앤비, <https://www.airbnb.co.kr/help/article/653/in-what-areas-is-occupancy-tax-collection-and-remittance-by-airbnb-available>, 검색일자: 2018.7.9.

220) 호주의 부가가치세(GST) 세율은 10%임

221)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 2015, p.1630 및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8*, 2018, pp.36~37.

- 한편,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모두 사업자번호(ABN)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차이가 있음²²²⁾
-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공급자는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번호(ABN)를 부여받아야 하며, 매출액이 75,000호주달러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함²²³⁾
 - 12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75,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할 의무는 없고 자발적으로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12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75,000호주달러를 초과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번호를 부여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이행해야 함
 - 이미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이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기존 등록된 사업자번호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정보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함
- 호주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공유경제활동의 종류를 숙박공유, 차량공유와 주차장소 공유로 구분하고, 전술한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과세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가) 숙박공유²²⁴⁾

- 호주에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거용

222) 호주 국세청, "Applying for an ABN," <https://abr.gov.au/For-Business,-Super-funds---Charities/Applying-for-an-ABN/>, 검색일자: 2018.6.20.

223) 호주 국세청, "Income tax and GST in the sharing economy,"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Income-tax-and-GST-in-the-sharing-economy/>, 검색일자: 2018.6.20.

224) 호주 국세청, "How GST applies to residential rent,"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ll-or-part-of-your-home/how-gst-applies-to-residential-rent/>, 검색일자: 2018.6.22.

주택을 대상으로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됨²²⁵⁾

- 다만, 호텔, 모텔, 여인숙,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카라반, 캠핑장 등과 이와 유사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주거용 상업시설을 임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주거용 상업시설의 임대는 연회장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시설의 임대를 의미함
 - 주거용 상업시설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임대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대기간이 27일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임대기간이 27일을 초과하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액의 50%를 면세하여 공급가액의 5%만 과세됨

- 호주는 상업시설이나 숙박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²²⁶⁾
 - 양도하는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양도시점에 공제신청할 수 있음

나) 차량공유 ²²⁷⁾

-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운전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택시사업자의 납세의무와 동일함

225) 호주 국세청, "How GST applies to residential rent,"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ll-or-part-of-your-home/how-gst-applies-to-residential-rent/>, 검색일자: 2018.6.22.

226) 호주 국세청, "Commercial residential premises and GST," <https://www.ato.gov.au/General/property/property-used-in-running-a-business/commercial-residential-premises-and-gst/>, 검색일자: 2018.6.22.

227) 호주 국세청, "Ride-sourcing,"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ide-sourcing/>, 검색일자: 2018.6.22.

- 차량공유 서비스의 제공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번호(ABN)를 부여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차량공유 서비스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승객이 지불하는 총운임(full amount of every fare)임
 - 결국, 승객의 지불대가에 포함되었으나 운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을 차감한 순액이 아닌 총운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운전자는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한 증빙을 모두 보관해야 함

다) 주차장소 공유²²⁸⁾

-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번호(ABN)를 부여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차장소공유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것으로 판단됨

라. 일본

1) 부가가치세

- 일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할 개인 사업자의 유형에 숙박공유나 차량공유를 영위하는 자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²²⁹⁾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임대업이나 거래의 중개, 운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

228) 호주 국세청, "Renting out a car parking space,"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Renting-out-a-car-parking-space/>, 검색일자: 2018.6.22.

229)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109.htm>, 검색일자: 2018.6.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영하여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²³⁰⁾
 - 공급가액 요건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1천만엔 이하이고, 직전년도의 첫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 1천만엔 이하인 경우임

- 숙박공유의 경우 호스트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규모 사업자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일본에서 차량공유에 참여한 운전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²³¹⁾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버 등 차량공유 플랫폼에 전세승용차나 택시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기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²³²⁾

2) 숙박세

- 일본은 오사카²³³⁾에서 민박(private lodging)에 대해 1인당 1박당 100~300엔의 숙박세를 부과함²³⁴⁾
 - 오사카는 민박 외에도 호텔, 여관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숙박세를 부과함
 - 숙박요금이 10,000~14,999엔인 경우 100엔, 15,000~19,999엔인 경우 200엔, 20,000엔 이상인 경우 300엔의 숙박세가 부과됨

230)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8, p.571.

231)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109.htm>, 검색일자: 2018.6.25.

232) 한국교통연구원(2015) p.82

233) 도쿄도 숙박세를 부과하는 도시지만 호텔과 료칸 이용자에게만 숙박세를 부과하므로 공유경제를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숙박세를 대부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료칸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숙박세를 입욕세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특정 도시만 입욕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본 전 지역에서 부과함

234) 노영훈(2017) p.64

마. 영국

- 현행 소득세법상 숙박, 차량공유와 주차장공유 등에 참여한 개인공급자의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사업자로 간주함
 - 영국 과세당국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개인공급자의 활동이 사업 목적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목적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연간 공급가액이 8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²³⁵⁾

3. 소결

가.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공유경제활동 중 현재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숙박공유와 차량공유에 대해서 살펴봄

- 미국, 영국, 일본, 호주와 우리나라 중 숙박공유 플랫폼에서 정부에 등록된 호스트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함
 - 우리나라도 호스트를 대상으로 단속활동도 벌이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한 호스트 외에 사업자등록 없는 호스트도 플랫폼을 통해 숙박공유에 참여하고 있어 일본과 상황이 다름
 - 그 밖에 미국은 주별로 숙박공유에 대한 제재가 다른데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산

235)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8, p.1236

타모니카는 주택의 단기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플랫폼을 통한 영업을 금지함²³⁶⁾

- 한편, 영국 런던은 숙박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법을 완화하여 9일 이내 단기숙박임대를 용이하게 했으며, 숙박공유법에 따르면 연간 90일까지의 숙박 제공 시 단기숙박을 위한 허가나 등록이 불필요함

〈표 IV-3〉 우리나라와 일본의 숙박공유와 관련한 법률 비교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도시민박업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
대상	• 호스트가 도시지역에 거주, 게스트가 외국인인 경우(내국인도 일정부분 가능)만 적용	• 기존 모텔, 호텔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을 숙박에 사용하는 자
방법	• 관할 시, 군, 구로부터 승인	• 도도부현에 신고
영업일수 제한	• 없음	•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
플랫폼에서의 사업활동	• 도시민박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능	• 주택숙박사업자인 경우만 가능
정부에 자료제공 의무	-	• 주택숙박사업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숙박기간, 인원, 게스트의 국적 등을 신고
숙박공유와 관련성	• 기존 법률을 일부 숙박공유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시도	• 숙박공유활동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도입

자료: 저자 작성

- 차량공유의 경우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존 택시사업자 등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미국과 영국은 기존 택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6) 김민정·이화령·황순주(2016) pp.265~271.

나. 소득세

1) 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 미국과 호주는 기존 세법규정을 활용해 개인의 공유경제활동에 과세하며, 일본과 영국은 공유경제활동에 적용할 과세방안을 논의 중임
 - 미국과 호주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공유경제활동에 적용될 세법규정과 세무신고 방법을 안내함
 - 영국은 2017년 개인에 대한 공유경제활동의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
 - 일본도 2017년 개인에 대한 공유경제활동의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

- 영국도 개인의 공유경제활동에 적용할 과세제도를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과세제도를 활용해 관련 소득에 과세한다고 밝힘
 -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재 개인의 공유경제활동에 적용할 과세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음

2) 과세소득의 결정

- 기존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할 경우 제공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므로 대표적인 숙박공유, 차량공유와 주차장소공유를 살펴봄
 - 공유경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숙박공유는 개인 호스트가 주택을 숙박공유에 사용하고 얻은 소득에 한해 소득구분을 살펴봄²³⁷⁾

237) 공유경제의 취지를 벗어나 상가,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을 숙박공유하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대상 국가 중 미국, 호주와 일본은 개인이 얻은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유경제에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잡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미국은 사업 목적 유무에 따라 숙박공유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잡소득으로 분류됨
 - 호주는 사업 목적에 관계 없이 임대소득으로 분류함
 - 일본은 숙박공유로 호스트가 얻은 소득을 대부분 잡소득으로 간주하며, 가능성은 희박하나 부동산소득에 해당될 수도 있음

- 우리나라와 영국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해서 과세하며, 영국은 사업 목적 유무에 따라 숙박공유로 호스트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안내함
 - 우리나라는 숙박공유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세법에 따라 판단하면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호스트가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주거용건물임대업(701102))으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의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로 등록한 자의 업종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이나 ‘숙박업’이며 사업자가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 영세하여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필요없이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공제함

- 미국, 영국과 우리나라는 주택의 숙박공유에서 얻은 일부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미국은 기간을 기준으로, 영국과 우리나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비과세함
 - 미국은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임대하고 얻은 소득을 비과세함

- 영국은 연간 1,000파운드의 소득까지 비과세함
- 우리나라는 한시적으로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하며, 숙박업이나 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표 IV-4〉 개인이 숙박공유를 통해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국제비교

국가	포괄주의 과세 여부	사업 목적 있는 경우	사업 목적 없는 경우	비과세
우리나라	열거된 항목만 과세	사업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	주택 임대인 경우만 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숙박업이나 도시민박업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미국	모든 소득을 과세	사업소득	잡소득 (기타소득과 동일)	연간 15일 미만의 기간동안 임대한 경우 비과세
호주	모든 소득을 과세	임대소득	임대소득	-
일본	모든 소득을 과세	부동산소득 (가능성 낮음)	대부분 잡소득에 해당	-
영국	열거된 항목만 과세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모두 적용되며, 연간 1,000파운드까지 비과세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우리나라, 미국, 호주, 일본과 영국 중 거주용 주택을 공유경제활동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또는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호주와 영국임
- 우리나라, 미국과 일본은 주택을 공유경제활동에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에 대한 비과세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호주와 영국은 주택의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수익창출(임대 또는 사업 활동)에 사용한 주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제 거주한

주택도 공유경제활동에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
 - 다만, 호주는 실제 임대에 사용한 기간과 임대한 면적에 해당하는 자본이득만
 과세대상에 포함함

〈표 IV-5〉 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국제비교

국가	주택의 양도소득 조세혜택	비과세 요건			공유경제에 참여 시 조세혜택 적용
		주택 수	보유 또는 거주	기타	
우리나라	• 비과세	• 1세대 1주택 보유인 경우만 적용	• 2년 보유(특정 지역 2년 거주)	-	• 적용
미국	• 25만달러 소득공제(부부 합산 시 50만 달러)	• 2년 내 다른 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않을 것	• 양도 직전 5년 중 2년 동안 보유하고 주로 거주	-	• 적용
호주	• 비과세	-	• 실질 거주	• 수익 창출에 사용하지 않을 것 • 토지가 2헥타르 이하	• 미적용
일본	• 3천만엔 소득공제 • 경감세율 적용(15%대신 10%의 세율로 과세)	-	• 거주하지 않게 된 과세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양도 •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등 일시적 목적으로 거주한 경우 불인정	• 특례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입주한 경우 적용 배제 • 별장 등 취미, 오락과 휴양을 위한 주택은 적용 배제	• 적용
영국	• 비과세	• 1주택 보유	• 보유기간 동안 실제 거주	• 임대, 사업활동에 주택을 사용하지 않을 것 • 토지가 총 5천평방미터 미만 • 이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가 아닐 것	• 미적용

자료: 저자 작성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존 택시사업자 등 승객운송을 위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호주는 세법상 사업자등록(ABN)²³⁸⁾을 완료한 자만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임
 - 미국과 영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한 사업자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찾지 못하였으나 영국은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함
 - 미국은 사업 목적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사업 목적 없이 얻은 소득은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영국은 차량공유활동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연간 1만마일 이하의 거리를 운행한 운전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다른 조사대상국에서는 차량공유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함

〈표 IV-6〉 개인이 차량공유를 통해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국제비교

	운전자 자격 요건	사업 목적 있는 경우	사업 목적 없는 경우	비과세
우리나라	택시사업자만 가능	사업소득	n/a	-
미국	-	사업소득	잡소득(기타소득과 동일)	1마일당 54.5센트 공제
호주	세법상 사업자 등록된 자만 가능	사업소득	n/a	-
일본	택시사업자 등 면허 보유 사업자만 가능	사업소득	n/a	-
영국	-	사업소득	n/a	연간 1만마일 이하

자료: 저자 작성

23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별개임

3) 비용공제

- 조사대상국은 모두 공유경제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주택과 차량을 사적 용도와 상업적인 용도로 동시에 사용한 경우 공유경제활동에 사용한 기간, 면적(숙박공유)이나 거리(차량공유)에 따라 안분하여 수익과 관련된 비용만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공유경제활동에서 얻은 소득이 현행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세법상 적용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의 비용공제 또는 비용불공제 규정이 공유경제활동에도 적용될 것임

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1) 부가가치세

- 일본, 호주와 영국은 공유경제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에 대해 현행 부가가치세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함
 - 공유경제에서 거래되는 서비스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면제 기준이 적용되므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 숙박공유의 경우 일본과 영국에서는 호스트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호주에서는 주택의 임대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것임
 - 호주에서 호스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인 사업자등록(ABN) 의무는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우리나라는 호스트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플랫폼을 통해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음
 - 지자체에 도시민박업으로 승인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지자체와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고도 호스트가 될 수 있어 사실상 기준이 모호함

- 차량공유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 호주와 영국에서 운전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전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함
 - 우리나라는 택시사업자만 차량공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공유활동에 참여한 운전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임

-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과 영국에서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공급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함
 - 면제 기준 금액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400만원, 호주의 경우 연간 75,000호주달러, 영국의 경우 연간 85,000파운드이며, 일본의 면제기준 금액은 직전 2년 동안 1천만엔이고 직전년도 첫 6개월 동안 1천만엔임

〈표 IV-7〉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요건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비과세 기준(매출액)	주택의 숙박공유 ¹⁾		차량공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
우리나라	연간 2,400만원	△	△	○	○
호주	연간 75,000호주달러	비과세대상	비과세대상	○	○
일본	직전년도 6개월 동안 1천만엔, 직전 2년 동안 1천만엔	○	○	○	○
영국	연간 85,000파운드	○	○	○	○

주: 1) 우리나라 주택의 숙박공유는 지자체에 도시민박업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의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자료: 저자 작성

2) 숙박세

- 미국 등 국가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도시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세를 부과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호스트를 대신하여 숙박세를 대리징수함
 -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 사업자가 호스트를 대신하여 숙박세를 대리징수한 후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강제함
 - 미국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호스트를 대신하여 관광객으로부터 숙박세를 대리징수하는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가 있음²³⁹⁾

- 일본도 오사카나 도쿄에서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플랫폼 사업자가 호스트를 대신하여 숙박세를 징수하지 않음

239) 에어비앤비, https://www.airbnb.co.kr/help/article/653/in-what-areas-is-occupancy-tax-collection-and-remittance-by-airbnb-available#New_York, 검색일자: 2018.7.9.

V. 공유경제 참여 개인의 거래정보 확보방안

-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공급자는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자진신고해본 경험이 없거나 납세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과거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은 대부분 기업에 소속되어 기업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관리해주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와 납부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정확한 세무신고 방법을 모를 가능성도 있음

- 또한, 국세청이 개인공급자의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며, 탈세 사실을 포착하기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공유는 참여 대상을 택시사업자로 제한하므로 차량공유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나, 사업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원포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개인 서비스 공급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공급자의 자진신고 및 성실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나 시스템을 소개함
 -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과 국세청의 세원포착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

1.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 제Ⅳ장에서 소득세 과세제도를 조사한 국가 중 호주와 미국은 납세자에게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세무처리 섹션을 운영함
 - 호주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The sharing economy and tax’ 섹션을 두고 대표적인 공유경제 유형(숙박공유, 차량공유와 주차장소공유)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²⁴⁰⁾
 - 미국도 국세청 홈페이지의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²⁴¹⁾에 대한 세금 안내의 세부 섹션으로 ‘Sharing Economy Tax Center’를 두고 공유경제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²⁴²⁾

- 캐나다도 국세청 홈페이지²⁴³⁾를 통해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및 HST)의 신고와 납부방법, 과거 미신고한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²⁴⁴⁾
 - 캐나다 국세청은 숙박공유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무신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제휴 대상을 확대하여 다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도 유사한 세무신고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24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 검색일자: 2018.7.2.

241) 미국 국세청의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 담당 부서(Small Business/Self Employed Division)에서 공유경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출처: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about-irs/todays-irs-organization>, 검색일자: 2018.7.2.

242)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7.2.

243)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17/involved-sharing-economy-know-your-tax-obligations.html>, 검색일자: 2018.7.2.

244)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2018, p.199

- 프랑스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시점에 국세와 사회보장세 납세에 대한 정보를 개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연간 1차례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사용자에게 플랫폼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²⁴⁵⁾
 - 또한, 거래시점에 국세와 사회보장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등을 제시하여 세무신고를 위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매년 1월 31일까지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가 얻은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위반 시 1만유로의 가산세가 부과됨²⁴⁶⁾

2. 국세청의 세원포착 방안

-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공급자가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국세청이 제3자(예를 들어,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개인 간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국제기구도 거래정보를 모두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가 국세청에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국세청이 거래참여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함
 - IMF는 공유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착하기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국세청에 거래정보를 직접 제출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대납하는 방안을 제안함²⁴⁷⁾
 - OECD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IMF와 유사하게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나 공유경제 관련 거래정보를 보유한 제3자가 국세청의 자료협조에 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제3자를 통해 거래참여자의

245)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2018, p.199

246) European Parliament, "The collaborative economy and taxation," p.21,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8/614718/EPRS_IDA\(2018\)614718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8/614718/EPRS_IDA(2018)614718_EN.pdf), 검색일자: 2018.7.2.

247) Aquib Aslam and Alpa Shah, "Taxation and the Peer-to-Peer Economy," IMF Working Paper, IMF, 2017.8.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²⁴⁸⁾

- 관련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성실납세 유도에 활용 가능함
- 다만, 국내에서 제3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률을 마련하더라도 외국법인인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가 불가능할 수 있음

가. 강제적·주기적 자료제출 의무

- 미국 국세청은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개인 간 거래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와 대금 결제기관의 두 경로로부터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이 제3자로부터 카드로 대금을 받았거나, 전년도에 Paypal 등 제3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급한 총대가가 2만달러를 초과하고 거래 건별 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은행, 카드사나 Paypal 등의 결제기관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국세청이 해당 거래에 참여한 개인의 소득 정보를 확보함²⁴⁹⁾
 - 한편,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지급조서를 제출받아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소득 정보를 확보함²⁵⁰⁾
 -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소득의 대금지급자가 대금수취자와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송부할 의무가 있음
 - 대부분의 유명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가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공유경제활동에 관한 개인의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진출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대다수의 국가는 미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248)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2018, p.199

249)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 검색일자: 2018.6.29.

250) 노영훈(2017), p.58

- 프랑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참여자의 소득 등 거래에 관한 정보를 세무당국(국세청 및 사회보장세 담당부처)에 직접 보고하는 제도가 2019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²⁵¹⁾
 -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소득에 대한 자동 보고 세무서식(secure automatic reporting of income for online platforms)’을 통해 사용자의 아이디, 이메일 주소, 납세형태(개인 또는 사업자), 연간 총소득 등의 정보를 제공함
 -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서식은 사용자의 이메일로도 발송됨

- 일본은 숙박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숙박기록 등 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²⁵²⁾
 - 플랫폼 사업자의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과세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됨

나. 국세청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 미국은 세무조사 중이 아니더라도 필요시 제3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세의 납부를 위해 기록하고 보관한 거래참여자의 정보를 국세청이 확보하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²⁵³⁾

251) European Parliament, “The collaborative economy and taxation,” p.21,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8/614718/EPRS_IDA\(2018\)614718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8/614718/EPRS_IDA(2018)614718_EN.pdf), 검색일자: 2018.7.2.

252)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109.htm>, 검색일자: 2018.6.25.

253) 노영훈(2017), pp.63~66

- 플랫폼 사업자는 숙박세 납부를 위해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거래규모, 거래 횟수, 비용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함²⁵⁴⁾
- 영국 국세청은 다양한 거래중개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²⁵⁵⁾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도 거래중개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²⁵⁶⁾
- 영국은 국세청이 불특정 납세자에 관한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3년과 2016년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며,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거래중개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자료제출 요청 대상을 확대함²⁵⁷⁾

3. 소결

-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공급자의 세무신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도입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조사함
- 개인공급자가 세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국세청의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공급자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임
- 이에 주요국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와 세무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청이 납세자의 거래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는지 조사함

254) 노영훈(2017), pp.63~66

255) 영국 정부,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gig-economy-an-updated-ots-focus-paper, 검색일자: 2018.6.26.

256) European Parliament, "The collaborative economy and taxation," p.19,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8/614718/EPRS_IDA\(2018\)614718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8/614718/EPRS_IDA(2018)614718_EN.pdf), 검색일자: 2018.7.2.

257) European Parliament, "The collaborative economy and taxation," p.21,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8/614718/EPRS_IDA\(2018\)614718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8/614718/EPRS_IDA(2018)614718_EN.pdf), 검색일자: 2018.7.2.

1) 납세자에 대한 세무신고 정보 제공

-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공급자에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신고방법을 안내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임
 - 일본과 영국의 경우 정부가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발표한 문서를 통해 현재 세무상 처리방법을 파악할 수 있음
- 미국과 프랑스는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거래내역과 소득을 통지함
 - 미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나 제3자 결제대행기관에서 대금을 수취한 개인에게 지급조서를 발행하며, 개인공급자는 지급조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함
 - 프랑스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개별 납세자에게 연간 1차례 거래내역과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발송함
- 우리나라 정부는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에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세방법을 공식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음

2) 제3자를 이용한 국세청의 자료 수집

- 국세청이 제3자로부터 주기적이고 강제적으로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소득과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제도를 도입했거나 논의 중인 국가는 미국, 프랑스와 일본임
 - 미국 국세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제3자 결제대행기관으로부터 지급조서를 제출받아 개인공급자가 얻은 소득과 거래정보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 국세청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개인공급자의 거래내역, 소득과 개인정보가 담긴 세무서식을 2020년부터 제공받을 예정임
 - 일본 국세청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참여자의 거래 및 소득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국세청이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참여자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으로 파악됨
- 미국과 영국에서는 세무조사 중이 아니더라도 필요시 제3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국세청이 해외 소재 플랫폼사업자에게 불특정 납세자의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V-1〉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거래내역 확보 방안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안내		제3자를 이용한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	
	정부가 관련 세무신고방법 안내	개별 납세자에게 세무신고 정보통지	강제적, 주기적 자료제출	과세자료 요청 시 자료제출 가능 여부
우리나라	-	-	-	-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	지급조서를 통해 일부 거래에 대한 소득정보 제공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 (지급조서)와 대금결제 기관이 거래내역 제출	숙박세 및 숙박세에 관한 정보 요청 시 거래정보 확보 가능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	-	-	
일본	정부문서에서 확인	-	논의 중	
영국	정부문서에서 확인	-	논의 중	거래중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가능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	-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프랑스	-	매년 1월 31일까지 전자적으로 소득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2020년부터 세무서식을 통해 거래내역 제출	

자료: 저자 작성

Ⅵ. 시사점 및 결론

1.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문제

가. 법인세

- OECD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를 논의하면서 근본적인 디지털경제 과세를 위한 새로운 과세연계점 개발과 함께 여러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방안을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 과세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1) 고정사업장의 대안적 기준

- 먼저,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의 대안적 적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면, 매출, 사용자, 디지털 요인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경제적 실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됨
 - 이때, 매출 및 사용자 규모,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결제방법 등의 현지화 등을 주로 고려하여 디지털 사업장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됨
-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한 새로운 과세연계점 접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디지털 사업자의 원천지국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새로운 과세연계점에 대한 국제 차원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 국가의

과세연계점 도입은 국제 차원에서 조세 불확실성과 복잡성, 이중과세 문제, 그리고 기존 조세조약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함

2)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

- EU, 이탈리아,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매출액 기준 과세 접근법은 대규모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점, 제도가 단순하고 세율이 낮다는 점 등에서 OECD가 권고한 한시적 제도의 설계 원칙에 부합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음
-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는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과세연계점 합의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유럽과 같이 디지털경제 규모가 크고 기존 전통경제와 불공정 경쟁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한시적인 과세방안으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매출액 기준 과세제도 역시 고정사업장의 대안적 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과세 문제와 기존 조세조약과의 마찰, 무역협정 등의 무차별조항 위배 가능성 등 많은 한계점을 가짐
- 인도의 경우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거래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어, WTO의 무차별 원칙 위배와 이중과세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반면, EU와 이탈리아의 경우 내·외국법인 모두에 과세하여 무차별 원칙 위배의 소지는 적으나,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EU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법인세로 조세조약 대상 조세(covered taxes)이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대안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조세조약 체결국의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짐

3) 원천징수제도의 활용

- 말레이시아²⁵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법인의 자국 내 온라인 광고 관련 서비스 등을 통한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 소득 재분류에 따른 원천징수 과세방안은 내국 세법에 도입된 것으로, 조세조약 체결국에 거주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등 한계점이 뚜렷함

4) 소결

- 결론적으로, 고정사업장의 대안적 기준(새로운 과세연계점)이나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는 접근법은 한 국가의 일방적(unilateral)인 조치로, 기존 조세조약 등 기존의 국제조세제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uncoordinated), 정책 효용성 면에서 한계를 가짐
 - EU는 EU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법인세 지침상 과세방안이 기존 조세조약 체결국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EU 회원국에 조세조약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²⁵⁹⁾
- 매출액 기준 과세 접근법은 제도의 단순성이나 대규모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258)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malaysia-enacts-finance-act-2017>, 접속일자: 2018.7.4.

259)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2141_en.htm, 검색일자: 2018.6.29.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이 역시 조세조약 체결국의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 제도가 한시적이라는 한계를 가짐

- 공유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의 과세문제에 한정하여 생각하면, 앞서 논의한 과세방안들이 가지는 한계점과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2020년 최종 합의될 새로운 과세연계점이 도출될 때까지는 별도의 과세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부가가치세

- OECD는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국제적 B2C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EU,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 해당 원칙을 제도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부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현행법상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국외 디지털 사업자의 국내 B2C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조세조약 등 기존 국제조세체계와 상충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개정(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효과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OECD나 EU 지침과 같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디지털 용역에 대한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적 규정으로 열거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유경제를 포함한 디지털경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화할 수 있음

- EU 지침은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용역으로, 그 성격상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적으로 제공되며, 정보기술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함²⁶⁰⁾
-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의 예시규정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이나 식당 예약 서비스로 열거함
- 앞서 기술한 공유경제를 포함한 디지털경제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안은 현행 국제제도 체계하에서 많은 한계점을 보이기 때문에, 먼저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조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를 통해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디지털경제 사업자의 국내 매출규모, 사업구조, 계약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조세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OECD의 새로운 과세연계점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실질적인 법인세 과세제도 도입을 준비할 수 있음

2. 개인 과세문제

가. 현행 과세 규정의 적용

-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방식만 과거 사업자가 개인에게 제공하던 것에서 개인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변한 것으로 최근 새로 출

260)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as referred to in Directive2006/112/EC shall include services which are delivered over the Internet or an electronic network and the nature of which renders their supply essentially automated and involving minimal human intervention, and impossible to ensure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연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방식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며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서비스의 종류도 확대될 것임
- 현재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는 서비스를 과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출현하면 적용하지 못할 수 있음

□ 주요국은 기존 세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됨

- 현재 미국, 호주, 영국 등의 주요국은 숙박공유와 차량공유에 관한 세무신고 방법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부 주차장소공유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승용차를 이용한 차량공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량공유 서비스에 택시사업자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숙박공유 서비스가 가장 활발함

□ 다만, 현행 세법규정을 공유경제활동에 바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세법규정의 적용을 위해 다른 법률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 세법이나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있음

□ 예를 들어, 규정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의 숙박공유 활동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 「관광진흥법」의 도시민박업 규정과 부가가치세 규정임

- 현재 숙박공유에 참여한 호스트가 지자체를 통해 도시민박업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는 플랫폼 사업자나 호스트가 기존 「관광진흥법」이나 부가가치세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활동을 영위했다고 비난하거나 단속만 할 문제는 아니며, 현행 도시민박업에 관한 규정이 도시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민박서비스를 제공한 호스트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호스트에게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 따라서 숙박공유에 참여한 호스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을 개정하고 국세청은 호스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기준과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함

나. 서비스 종류별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검토

-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동일 서비스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공했을 때 얻는 소득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임
- 현행 「소득세법」은 제공된 서비스 종류에 따라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이 달라지므로 주로 거래되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열거한 소득에 한해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에 관련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규정을 보완해야 함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소득세를 포괄적으로 과세하여 열거하지 않은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열거하지 않은 소득을 과세할 수 없음
- 숙박공유나 주차장소공유 등 “장소나 물품을 임대”한 경우 사업 목적 유무에 따라 사업 목적을 갖고 숙박공유 등에 참여한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 목적 없이 참여한 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 일본과 영국은 모두 사업 목적 유무에 따라 호스트의 소득을 사업소득이나 잡소득(기타소득 또는 임대소득)으로 구분함
 -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에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숙박공유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는 과세당국의 공식적 예규나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차량공유의 경우 기존 택시사업자 등이 거래방법을 바꿔 플랫폼에 참여한 경우

므로 기존 택시사업자의 소득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 결국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존 과세제도의 범위 내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공유경제 사업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규정도 과세제도와 함께 검토해야 함

다. 소규모 참여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 도입

- 파트타임이나 부업의 형태로 숙박공유나 차량공유에 참여하고 소액의 소득을 얻은 개인까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소득세 면세점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국세청의 납세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소득을 2018년까지 2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지만, 이는 숙박공유를 위한 규정이 아닌 주택시장의 안정과 납세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규정이므로, 숙박공유에 적용할 소득세 면세점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숙박공유의 경우 영국은 연간 1,000파운드의 소득공제를, 미국은 연간 15일 미만의 기간 임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통해 소규모 거래 참여자의 소득을 면세함

라. 수익창출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의 비과세 검토

-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 거주 요건 추가)하면 비과세가 적용됨
-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1975년부터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²⁶¹⁾

- 실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주와 같이 수익활동에 사용하던 주택을 주택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나, 다주택자나 주택의 실질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택을 수익활동에 사용하고 상당한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 시점에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수익창출에 활용된 주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계속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는 있음
 - 숙박공유의 규모와 거래 참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자의 명확화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공유경제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요건에 부합하는가를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하여 규정에 어긋난 호스트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도시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의 분류 여부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숙박공유에 참여한 호스트가 도시민박업, 숙박업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적용 대상인가를 지자체와 과세당국이 일관된 입장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이는 주택의 임대를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된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임
 - 도시민박업 적용 기준을 숙박공유에 참여한 호스트에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려면 도시민박업의 적용대상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유경제 참여 개인의 거래정보 확보방안

-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불필요해졌으며,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자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상황에 직면함
 - 과거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국세청이 납세행정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었으나, 공유경제의 출현으로 납세행정비용이 상당부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서비스 제공자도 근로소득자로 있을 때보다 세무신고를 위해 소득세 규정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됨
- 결국 공유경제의 출현으로 국세청이 개별 공유거래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개인 납세자에게 세무신고를 안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
- 우리나라도 국세청이 직접 거래규모가 큰 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개인 납세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나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신고 방법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음
 - 납세자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시점에 사용자에게 세무정보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도록 안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내 공유경제활동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세무신고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공유경제 관련 내용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의 소득과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국세청에 거래 정보와 거래참여자의 소득정보가 담긴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조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무당국이 결제기관이나 플랫폼에 제3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거나 관련 제도를 검토 중임
-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거래 참여자에 대한 납세행정비용과 협력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 영국과 일본 정부의 공유경제활동 참여자에 대한 과세 논의의 핵심도 세원을 포착하고 납세행정비용과 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세방법을 찾는 것임
 - 영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인 전산화 프로젝트를 통해 공유경제 참여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다고 봄
 - 또한 영국은 소액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만 과세당국에 보고하면 세무신고가 완료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

4. 결론

- 본고에서 공유경제 플랫폼과 플랫폼 거래에 참여한 사용자의 소득과 거래에 과세할 수 방안을 검토하였음
 -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사용자인 개인공급자의 과세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살펴봄
- 현 단계에서 소득세 과세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 사용자 단계에서의 과세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수수료수익과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못함

□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한시적 제도들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법인세 과세방안 마련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20년까지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될 새로운 과세연계점 논의에 참여하고 진행현황을 검토하여, 관련 최종 합의안의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외국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인세와 달리 현행 국제조세체계와의 상충 가능성이 적고 즉각적인 세수효과 및 공정경쟁 제고 차원에서 2014년 도입한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조항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전자적 용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규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사용자인 개인공급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규정이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행 소득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과세당국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방법을 적극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

-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한 개인공급자의 소득과 거래에 과세하기 위해 새로운 제

도를 도입하더라도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형태가 변화하면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과세당국은 활발하게 거래되는 공유경제 서비스²⁶²⁾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서비스에 적용할 소득세 규정을 안내해야 할 것임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개인공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 사용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공급자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특히, 공유경제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는 세원포착과 탈세방지, 납세행정 및 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다른 국가에서 시행 중인 플랫폼 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정보 확보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62) 현재 숙박공유, 차량공유와 주차장소공유 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유형임

참고문헌

- 강상욱·서영욱·이민호, 『우버의 출현과 택시시장의 변화』, 한국교통연구원, 2015.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 소득세』, 2016.
-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2013.
- 김빛마로·유현영·김민경,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나승권·김은미·최은혜,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노영훈, 『공유경제시대에서의 조세정책적 과제: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뉴스핌, 「에어비앤비, 불법 민박에 속수무책..무분별 규제개혁 도마 위로」, 2018.
-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오종현·송은주·정경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12.
- 유현영·홍민옥, 「디지털경제 체제하의 소득세 과세 이슈와 시사점: 최근 OECD와 EU의 논의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2010.
- 이성엽,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행정법연구』, 2016, Vol. 44, pp.19~41.
- 함창모, 「공유경제의 이해와 대응」, 『충북 Issue & Trend』, Vol. 24, 2016, pp.7~11.
- Aqib Aslam and Shah, Alpa, “Taxation and the Peer to Peer Economy,” IMF working paper, IMF, 2017.

-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8*, 2018.
- European Commission,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 _____,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042/2013 of 7 October 2013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as regards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 _____,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laying down implementing measures for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recast).*
- _____, *EU VAT Directive 2006/112/EC.*
- _____, *Guide to the VAT mini One Stop Shop*, 2013
- _____,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laying down rule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2018.
- _____,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2018.
- _____,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March, 2018.
- European Parliament, “the collaborative economy and taxation,” 2017.11.
- Giana M. EckhardtFleura Bardhi, “The Sharing Economy Isn’t About Sharing at All,” *Harvard Business Review*, 2015.
- Government of India, Budget 2018-2019 Speech.
- G. Mann, Australia - *Goods and Services Tax*, Topical Analyses IBFD (accessed 3 July 2018), 3.5. Importation.
- Lawrence Lessig,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Books, 2008, pp.143~161.
- NatCen, *Research on the Sharing Economy*, HMRC report 453, 2017.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_____,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2017.

_____,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

_____,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Action 7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_____,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8

Independent, "Pimlico Plumbers in landmark gig economy case," 2018.

PwC, "The Sharing Economy: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2014.

Reuters, "In Japan, new rules may leave home-sharing industry out in the cold," 2018.

"Slovak Republic - *Draft amendments regarding PEs to be approved by parliament*," 11 Dec. 2017, News IBFD.

"Slovak Republic - *Guidelines for taxation of non-resident operators of digital platforms*," 24 Apr. 2018, News IBFD.

TAX NOTES INTERNATIONAL, "Estonian Presidency Warns Against 'Quick Fixes' to Tax Digital Economy," September 11, 2017.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 2015.

〈웹사이트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검색일자: 2018.7.3.

에어비앤비, <http://ww.airbnb.co.kr>, 검색일자: 2018.6.25.

영국 정부, <http://www.gov.uk>, 검색일자: 2018.6.26.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검색일자: 2018.7.3.
- 일본 관광청, <http://www.mlit.go.jp>, 검색일자 2018.6.25.
- 호주 국세청 , <https://www.ato.gov.au>, 검색일자: 2018.7.3.
- AirDNA, <https://www.airdna.co/>, 검색일자: 2018.6.26.
-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index_en, 검색일자: 2018.6.29.
- EY, <https://www.ey.com>, 검색일자: 2018.7.3.
- G20/OECD BEPS Project, <http://www.oecd.org/tax/beps/>, 검색일자: 2018.6.27.
- Government of India, <https://www.indiabudget.gov.in>, 검색일자: 2018.7.2.
- Jeremiah Owyang, <http://www.web-strategist.com/blog>, 검색일자: 2018.6.22.
- KPMG, <https://home.kpmg.com>, 검색일자: 2018.7.2.
- MNE Tax, <https://mnetax.com>, 검색일자: 2018.7.2.
- OECD, <http://www.oecd.org>, 검색일자: 2018.6.27.
- PwC, <https://www.pwc.com>, 검색일자: 2018.7.1.
- Samili.com, <http://www.samili.com/>, 검색일자: 2018.6.27.
- The Irish Times, <https://www.irishtimes.com>, 검색일자: 2018.6.29.

세법연구 18-06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발 행 2018년 6월 29일

저 자 김재진 · 유현영 · 홍민욱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43-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